

『인천광역시 체육회』 2019년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12. 16.부터 12.27.(9일간) 인천광역시체육회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41건(본처분 33건, 현지처분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16,064천원을 추징·회수와 경징계 2건, 훈계 3건 등의 조치를 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현황 (건)			행정상조치 (건)					재정상조치 (천원)			신분상조치 (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회수	환급·감액등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41	33	8	28	12	10	3	3	16,064	16,064	(209)		2건	3건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인천광역시체육회 개인정보 처리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시 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체육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시 체육회와 5개소의 체육시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규정에 의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공개 관련

‘시 체육회’ 각 시설별 개별 홈페이지에서 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량이 ○○○ (00000명), ○○○(00000명), ○○○(00000명), ○○○(0000명), ○○○(0000명), ○○○ 부(0000명), ○○○(약 0000여명) 등 연간 약 8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각각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호 시설별로 호환되지 않아 중복수집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를 경영지원부 1인이 전산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체육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 기본계획’, ‘○○○방침’, ‘○○○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각종 ○○○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가 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인 ‘직원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

2. 체육회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관련

시 체육회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문서의 생산 유통량 증가로 문서관리의 신뢰성 및 문서관리 체계의 강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0000.00.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내지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에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금지행위)의 규정에 의거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정보를 권한범위를 넘어서 처리행위를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체육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다른 퇴직자들의 ID 로 전자결재시스템에 로그인 가능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의 문서 보안이 담보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등 시스템을 보완 시행하여 주시고,
- ② ‘시 체육회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접근 권한 가능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체육회 직인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시 체육회’)에서는 ‘시 체육회’의 문서작성, 처리, 통제,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및 문서관리 등을 『인천광역시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이하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표 1]에 있는 종류의 인장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1] 《인천광역시 체육회 사용 직인의 종류》

사용 직인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 ○○○인 ◦ ○○○□□의 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관, ○○관, ○○원, ○○원 및 ○○자의 직인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승인한 경우 	

시 체육회에서는 직인의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은 ‘체육회 사무관리 규정’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인 관리부서에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현재의 직인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직인 직접 사용시 직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 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을 하는 등 직접 사용에 정확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 체육회에서는 ‘시 체육회 사무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한 직인들에 대한 ‘○○대장’ 및 ‘○○부’ 등을 비치·관리하지 않아 직인의 최초 각인 이력 및 직인의 개정, 분실, 마멸시 필요한 갱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특히 감사일 현재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직인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다.

또한, 수기로 직인을 사용하는데 있어 임의 서식인 ‘○○○○관리대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재문서와 대조하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시 체육회’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담보하는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시정) 시 체육회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부 등록 등’ 직인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고 · 주의 · 훈계 · 징계요구

제 목 ○○○○경기장 안전관리 소홀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관을 비롯한 13개(17년 당시)의 체육시설 등을 인천광역시(이하 ‘시’)에서 위탁관리 운영함으로써 체육운동을 범시민 화하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스포츠를 통한 시민 위상을 제고하여 시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산업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규정에 의거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하여 작업자들에게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제42조(추락 의 방지) 규정에 의거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규정의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 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장’은 2014.8.12.부터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었으며 ○○○급 ○○○은 2015.10.1. ~ 2017.8.3.일까지 ‘○○○○경기장팀’의 ‘○○○○경기장’에서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경기장내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 시 설물 유지 관리, ○○경기장내 전광판 및 계측장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급 ○○○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 및 각종 민원응대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체육회 ○□○□부(○□○□경기장팀) ○○○급 ○○○은 ○□○□경기장내 지하1층 ○□경기장 ○○장 ○○내 조명교체를 ○○○○.○.○.(○) 09:30분경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행정5급 배기홍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작업에 참여한 직원 ○○○ 외 3인(○○직 ○○○, ○○○ / ○○ ○○○, ○○○)은 ○○○급 ○○○의 현장감독 없이 작업을 실시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직원 ○○○(뇌진탕, 팔꿈치 타박상, 손, 손목 등의 타박상) 및 ○○ ○○○(안면 골절, 치아 3개 골절, 왼쪽 손목 골절) 등이 다치는 중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처리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산업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시 체육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직원의 임용 및 포상, 징계 등 업무를 처리한다.

○○○○.○.○.(○) 09:30경 발생한 ‘○□○□경기장’ 보조경기장내 ○○장 ○내 조명교체를 사다리로 작업중 직원 ○○○(뇌진탕, 팔꿈치 타박상, 손, 손목 등의 타박상) 및 ○○ ○○○(안면 골절, 치아 3개 골절, 왼쪽 손목 골절) 등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 발생당시 ‘인사위원회 간사(○○○○팀장 ○○○) 및 서기(○○○팀 ○○ ○○○)’는 ○○○○.○.○○.(○) 사고당시 실무담당자인 ○○○급 ○○○을 대면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였고, ○○○○.○.○○.(○) ‘○□○□경기장 사고 경위조사 및 향후대책’을 업무보고 하였다.

그러나, 시 체육회 ‘인사위원회 간사(○○○○팀장 ○○○) 및 서기(○○○팀 ○○○○○)’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 하였음에도 『인사규정』 제55조(징계사유) 및 제56조(징계의종류) 및 『인사규칙』 제59조(징계종류)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진단보고’ 조치 등만을 취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권고) ① ‘산업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시 체육회’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니 향후 동일한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로 안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산업안전 관련 내부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래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 체육회 인사규정’ 및 ‘인사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 안전임에도 미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① (훈계) ○□○□경기장팀 ○○○ ○○○

② (경징계:견책이상) ○□○경기장팀 ○○○ ○○○

인 천 광 역 시

주의 · 훈계요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 입찰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시 체육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입찰실시 업무는 경영지원부 회계팀에서 실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계약업무는 각 체육시설운영부의 체육시설 공유재산 담당이 하고 있다.

1. 지명입찰 실시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종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나,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¹⁾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1호. 특수한 설비 기술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1호에서 12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그러나 ‘시 체육회’에서는 ○□○□부-○○(○○○○.○.○○.) 호로 ‘○□○□ 공유 재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공고문상 입찰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회원종목 단체로 인천광역시에 근거를 둔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하여 특정단체로 과도하게 제한을 두었 으며,

입찰 조서상에는 공고와 달리 개인이 입찰 가능하도록 하여, 개찰결과를 통보(○□ ○□부-○○○, ○○○○.○.○○.) 하면서 공고문상 입찰 참가자격과 입찰조서, 개찰 조서, 낙찰결과 보고서상의 입찰자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공유재산 대부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 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 부기한)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100만원 초과는 6월 이내 3 회분납,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 4회 분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기장’ 공유재산 담당자 ○○○ □□□는 ‘○□○□경기장 공유재 산 개찰결과 통보’(○□○□-○○○, ○○○○.○.○○.)를 받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낙찰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허가신청 서’ 등 제출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낙찰자로 결정된 ‘○○□○□협회’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경기장’ 공유재산 담당자 ○○○ □□□는 ‘○□○□협회’가 ○□○□-○○-○○(○○○○.○.○○.)호로 임대료 분할 납부 신청 하기 전까지 ○○○○.○.○○. ~ ○○○○.○.○○.까지 ○○일간 임대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주의)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입찰업무 추진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입찰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입찰 공고시에도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입찰조서, 개찰조서, 낙찰결과통보 등을 실시하는 데 있어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입찰 업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공유재산 임대관련 입찰 및 계약업무를 일원화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① (훈계) ○○○○경기장팀

○○○○ □□□

인천광역시 시정·훈계·징계요구

제 목 □○□○□ 공유재산 무단 사용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운영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이하 ‘시 체육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인 체육시설(□○□○ 등 16개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시 체육회에서는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의 기준에 의거 공유재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체육회(○●◎◇◇)에서는 2019.11.25. 지역 언론에 ‘□○□○협회’에서 2017.8.1.부터 2019.12.4.까지 □○□○ □○□○(전용면적 약 20㎡)에 고압가스(공기) 충전시설을 미허가 상태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언론 보도 후 무단 점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리 위탁 받은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

지 못하였으며 특히, [표 1] 에서와 같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데도 이를 관리자로서 감사 개시일 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표 1] 연도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현황

구분	기간	면적		산출금액		
		전용	공용	계	대부료	변상금(20%)
계				3,775,880	3,146,580	629,300
●○년	‘●○.8.1. ~ 12.31. (153일)	20m ²	4m ²	653,500	544,590	108,910
○◇년	‘○◇.1.1. ~ 12.31. (365일)	20m ²	4m ²	1,605,550	1,337,960	267,590
◆□년	‘◇◆.1.1. ~ 12.4. (339일)	20m ²	4m ²	1,516,830	1,264,030	252,800

※ □○□○협회에서 인정 사실확인서 기재출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시정) ①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한 곳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 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적법한 시설로 시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여 공유재산의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 ② □○□○내에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이용한 □○□○협회에는 [표 1]의 산출된 대부료 및 변상금 ₩3,775,880원(대부료 3,146,580원, 변상금 629,300원)을 추징 조치 바랍니다.
- ③ 아래 관련자를 훈계, 징계(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① (훈계) □○□○부 ○○○○ ○○○
- ② (경징계:견책이상) □○□○부 ○○○○ ○○○
- ③ (경징계:견책이상) □○□○부 ○○○○ ○○○
- ④ (경징계:견책이상) □○□○부 ○○○○ ○○○

인천광역시

시정·주의·권고 요구

제 목 2018년 생활체육대축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과, △부
 내 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동기
 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또한 보조사업의 운용평가는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제고
 실적과 예산낭비 사실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1.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천시체육회는(이하“체육회”) 충남에서 개최한 생활체육대축전(2018.5.10.~
 5.13. 4일간)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382,500천원을 교부받아 그중 180,662천원을
 27개 종목별 회원단체의 참가계획에 따른 참가일정, 참가인원을 근거로 하여 숙박비
 60,570천원, 급양비 59,792천원, 교통비 60,300천원을 재교부 하였고, 실제집행액은 숙
 박비56,261,000원(감4,309,000원), 급양비56,770,200원(감3,021,800원), 교통비 53,000,000
 원(감7,300,000원)을 지출하고 정산보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산 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사업부서
 에서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 및 ○과에서는 5개 종목단체의 숙박비 정산에 있어,
 [표 1]과 같이 A협회의 경우 참가일정 변경에 따른 1박이 감소 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25천원을 과다 사용하였다. 또한 B협회를 포함 5개 종목단체의 경우 숙박비 정
 산자료에 숙박자 세부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정산하였다.

[표 1] 5개 종목단체 숙박비 정산내역

(단가: 30천원/ 단위:천원)

종목단체명	참가일정	참가계획			실집행액	부당 청구액	내 용
		참가 선수	박	지급액			
A협회	5.10.-5.11.	15명	2	900	1,225	25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일정변경에 따른 1박감소 -숙박비 미반납액 (30천원×40명×1박=1,200천원) -(실사용액 1,225천원) = 25천원
	5.12.-5.13.	25명	2	1,500			
B협회	5.11.-5.12.	30명	1	900	900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C협회	5.9.-5.11.	18 (어르신)	2	1,080	1,080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5.11-5.13.	18 (일반)	2	1,080	1,080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D협회	5.11.-5.12.	14	1	900	900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E협회	5.10.-5.12.	50명	2	3,000	3,000		증빙자료 없음(숙박자 명단)

또한 2개 종목단체는 급양비를 정산함에 있어, [표2]와 같이 A협회는 어르신팀(7명, 5.9.~5.11), 일반팀(18명, 5.11~5.13.)이 참가하면서 어르신팀의 일정이 5.11.로 종료되었음에도 5.13. 중식 및 석식을 어르신팀과 일반팀이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중식 18명, 석식 18명에 대한 식비 520,500원을 허위로 사용하여 정산하였고, B협회의 경우 당초일정(5.11~5.14.)에서 1일이 감소(5.11~5.13.)하였음에도 3식에 대한 급양비 152,000원만 반납하고 304,000원을 과다 사용하였다.

[표 2] 2개 종목단체 급양비 정산내역

(단위:천원)

종목단체명	참가일정	참가계획				실 집행액	부당 청구액	내 용
		참가선수	식	단가	지급액			
A협회	5.9.-5.11.	18 (어르신)	7	8	1,008	418		
	5.11-5.13.	18명 (일반)	7	8	1,008	1,434	520.5	5.13 중식(어르신 196.5천원) -393천원(36명)-196.5천원(18명 일반) =196.5천원 5.13. 석식(어르신 324천원) -648천원(36명)-324천원(18명 일반) =324천원 부당 청구액 520.5천원 -196.5천원+324천원=520.5천원
B협회	5.11-5.13.	19명	10	8	1,520	1,368 (152반납)	304	일정변경에 의한 1박감소 -급양비 미반납액 304천원 : (8천원×19명×3식)-기반납(152천원)=304천원 *당초일정 5.10.-5.13.

게다가, C협회의 경우 사무국장활동비로 재교부된 200,000원 중 ○센타(5.11. 36,000원) 및 △코리아(5.12. 8,300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품의서에 집행 목적, 물품내역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첨부하여 정산완료 하였다.

2. 차량임차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체육회가 27개 종목단체에 재교부한 참가비는 숙박비, 급양비,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비는 60,300천원이며 실제 차량임차로 집행된 금액은 53,000천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종목별 단체로부터 참가계획 및 참가인원에 따른 차량수요를 파악하여 경쟁입찰계약으로 보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비를 종목단체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각 종목단체가 수의로 계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였고, ○과는 보조금 정산심의를 하면서 일반경쟁입찰로 보조금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하지 않고 심의를 완료하였다.

[표 3] 종목단체 차량임차 정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종목단체수	단가	대수	금액	비고
임차비 지원액	27개	450	134대	60,300	
실집행액	계		118대	53,000	1개 종목단체 차량임차 안함
	25개	450	114대	51,300	
	1개	425	4대	1,700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3. 참가 종목단체 성적우수 포상금 원천징수 미이행

체육회는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종목단체에게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2위를 차지한 ○포함 6개 종목단체에 각 700천원씩 4,200천원을 지급하였고, 종합3위를 차지한 △포함 3개 종목단체에 각 500천원씩 1,500천원을 총 5,7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1호에 따르면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우수팀에 대한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한편, 단체가 받은 포상금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²⁾에 따라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개인이 받는 포상금 뿐 만 아니라 단체가 받는 포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율(80%)를 차감하고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성적우수단체에게 지급한 포상금 5,7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50,8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구분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시정·주의) A협회 숙박비 부당청구액 25,000원, B협회 등 2개 종목단체 급양비 부당청구액 824,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검사 및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주의)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포상금등의 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괄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인천시광역시 체육회는(이하 ‘체육회’) 업무상 필요차량을 [표 1]과 같이 소유·임차하여 체육회 사무위임전결규칙 [별표 사무위임전결기준] 14번 마항에 의하여 차량유지관리에 대하여 담당팀장 전결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일자, 사용자, 운행목적(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 누적운행거리를 기록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인천시체육회 공용차량 관리·운영현황

[단위: 대]

부서	계	소유	임대	사용현황
	43	17	26	
△부	3	2	1	체육회장(1), 부서공용(2)
○부	22	7	15	체육회운동경기부(7), 시청운동경기부(11), 부서공용(3), 과학센터(1)
□부	18	8	10	선학경기장(1), 올림픽기념과(2), 남동경기장(1), 문학경기장(1), 박태환수영장(1), 소규모체육시설(1), 열우물경기장(1), 도원체육관(2), LNG(4), 조경관리(3), 옥련사격장(1)

이에 따라 △부, ○부에서 관리중인 차량의 차량운행일지에는 운행목적(경유지 및 목적지 포함)과 차량의 입.출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목적지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부의 경우는 목적지 기재 없이 ‘훈련’ 으로만 기재하였으며, 담당과 팀장의 결재도 없이 차량키의 입.출고를 경비원이 확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부, ○부 관리중인 모든 차량들이 각 차량별 운행목적 및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의 수불량을 기록하지 않아 차량별 실제주유량과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량을 알 수가 없어 공무외의 사용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회는 43대의 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부에서 관리중인 22대의 차량은 배차신청도 없이 차량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유차량의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이력부조차 비치하지 않아 정기정검·정비사항의 기록 등 체계적인 차량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시체육회장은

(시정)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시어 보유차량에 대한 운영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 요구

제 목 우수선수 육성비 등 지급 실태 및 개선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우수선수 육성비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지원규칙」(이하, “지원규칙”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및 회장의 선발에 따라 우리시 대표선수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별표 1 기준에 따라 우수선수육성비를 등급별 월 지급액을 1년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월 지급액	지급기간
특급	1,000 이하	1년
1급	500 이하	1년
2급	300 이하	1년
3급	200 이하	1년
4급	100 이하	1년

※지원규칙 별표 1

이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표 1과 같이 우수선수 육성비를 지급하면서 등급별 최고금액(특급 1,000천원, 1급 500천원, 2급 300천원, 3급 200천원, 4급 100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부에서는 전국체육대회 44개 정식

종목 우수선수를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위원회 심의 및 선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규정과 다르게 1년이 아닌 10개월 (3월~12월)만 지급하였다.

[표 2] 연도별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총액	지급기간	기간차이
2015년도	○○○ 등 33명	108,000	3월 ~ 12월	2개월
2016년도	△△△ 등 36명	100,000	3월 ~ 12월	2개월
2017년도	□□□ 등 35명	97,000	3월 ~ 12월	2개월
2018년도	◇◇◇ 등 27명	97,000	3월 ~ 12월	2개월
2019년도	▽▽▽ 등 28명	98,000	3월 ~ 12월	2개월

2. 전략종목 선수육성비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지원규칙」 제4조(지원항목)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및 상위입상 지원을 위한 항목은 학교체육육성지원비, 특수단체훈련비 및 운영지원비, 우수선수육성비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관련 조문을 구성하여 필요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전략종목선수 육성비 지급내규(2014. 7.15.제정)」는 본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2015.12.28. 폐지되었으며 2016.11.30. 제정된 지원규칙에는 전략종목선수육성비의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런데도, ○부에서는 별지 1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관련규정 없이 총 14명, 42,000천원을 폐지된 지급내규와 내부방침으로 전략종목선수 육성비를 지급하였다.

[표 3] 전략종목 선수육성비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인원인원	8명	-	8명	3명	3명
지원금액	12,000	-	12,000	15,000	15,000
지원근거	지급내규	-	내부방침	내부방침	내부방침

3. 체육지도자 포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체육지도자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배출한 지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전국규모대회(국내종합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규칙」 별표4를 지급근거로 지도자(감독,코치)에게 해당 종목 선수의 최고성적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4]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 액	비 고
전국하계 체육대회	메달획득 선수 및 지도자	금메달	500,000	
		은메달	300,000	
		동메달	200,000	
전국동계 체육대회	메달획득 선수 및 지도자	금메달	500,000	
		은메달	300,000	
		동메달	200,000	

※지급규칙 별표4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규정인 「인천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제5조(입상보상금)별표4에 따른 입상보상금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 결과,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체육대회 입상한 선수를 배출한 지도자에게 [표6] 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5]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지도자 및 선수	전국규모대회	개인당	3,000	2,000	1,000

※운영규칙 별표4

[표 6] 연도별 체육대회지도자 포상금지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지급년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급인원	50명	14명	13명	11명	12명
지급액	112,000	31,000	29,000	26,000	26,000

체육지도자란 「인천광역시 체육지도자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경기종목 및 취약종목 또는 신설된 종목의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임용하여, 회원종목단체 등에 배정하여 파견하는 인력으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³⁾ 소속 지도자로 볼 수 없으며, 체육회에서 임용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개선) ①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지원규칙」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비는 현실정에 맞도록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전략종목선수 육성비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②체육지도자 포상금을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시거나 취약종목 등 육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포상이 필요하다면 따로 지급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제2조에 의하면 운동경기부는 단장,부단장,팀장,각 1명과 종목별 감독, 코치(트레이너,플레이코치), 선수로 구성

전략종목선수육성비 지급 현황 ('15- '19년도)

(단위: 천원)

연번	연도	종목	성명	계약기간	근무기간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급
1	2015	△△△	○○○	2015.08.01~2015.10.31	2015.08.01~2015.10.31	2015.08.03.	2,000	4급
2		△△△	○○○	2015.08.01~2015.10.31	2015.08.01~2015.10.31	2015.08.03.	2,000	4급
3		△△△	○○○	2015.08.01~2015.10.31	2015.08.01~2015.10.31	2015.08.13.	2,000	4급
4		△△△	○○○	2015.08.01~2015.10.31	2015.08.01~2015.10.31	2015.08.13.	1,000	4급
5		△△△	○○○	2015.08.01~2015.10.31	2015.08.01~2015.10.31	2015.08.13.	1,000	4급
6		△△△	○○○	2015.09.04~2015.10.31	2015.09.04~2015.10.31	2015.09.16.	1,000	4급
7		△△△	○○○	2015.09.04~2015.10.31	2015.09.04~2015.10.31	2015.09.16.	1,000	4급
8		△△△	○○○	2015.09.15~2015.10.31	2015.09.15~2015.10.31	2015.09.22.	2,000	4급
				2015년	소계		12,000	
9	2016	없음						
10	2017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2,000	3급
11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2,000	3급
12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2,000	4급
13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1,000	4급
14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1,000	4급
15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1,000	4급
16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2,000	3급
17		△△△	○○○	2017.09.01~2017.10.31	2017.09.01~2017.10.31	2017.09.27.	1,000	4급
				2017년	소계		12,000	
18	2018	△△△	○○○	2018.09.10~2018.10.18	2018.09.10~2018.10.18	2018.09.11	5,000	특급
19		△△△	○○○	2018.09.10~2018.10.18	2018.09.10~2018.10.18	2018.09.11	5,000	특급
20		△△△	○○○	2018.09.10~2018.10.18	2018.09.10~2018.10.18	2018.09.11	5,000	2급
				2018년	소계		15,000	
21	2019	△△△	○○○	2019.06.01~2019.10.10	2019.06.01~2019.10.10	2019.05.23	10,000	1급
22		△△△	○○○	2019.05.16.~2019.10.10	2019.05.16.~2019.10.10	2019.05.23	3,000	3급
23		△△△	○○○	2019.05.15.~2019.10.10	2019.05.15.~2019.10.10	2019.05.23	2,000	2급
				2019년	소계		15,000	

별지 2

체육지도자 포상금 지급 현황 ('16- '19년도)

(단위: 천원)

연도별	성명	파견기관	종목	지도실적	지급액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은 2개, 동 2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은 2개, 동 2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동 1개	2,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2,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동 3개	2,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은 1개	3,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6	○○○	△△△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동 2개	3,000
			2016년	소계	31,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은 1개, 동 2개	3,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3,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3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3,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2개, 동 1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은 1개	3,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2개, 동 1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동 1개	2,000
2017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3,000
			2017년	소계	29,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동 2개	3,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2,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2개, 은 1개	3,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동 1개	1,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2,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동 1개	3,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은 1개, 동 2개	2,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은 1개, 동 1개	3,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1개, 은 1개	3,000
2018	○○○	△△△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 4개, 동 1개	3,000
			2018년	소계	26,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동 1개	1,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은 1개, 동 1개	2,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은 1개, 동 1개	2,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동 1개	1,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금 1개	3,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동 1개	1,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금 3개, 은 2개, 동 3개	3,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금 3개, 은 1개, 동 1개	3,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은 1개	2,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금 2개, 은 1개	3,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은 1개	2,000
2019	○○○	△△△	○○○	제100회 전국체전 금 2개	3,000
			2019년	소계	26,000

※ 여러개의 기록갱신을 수립할 경우 최고 신기록 1개만 해당함.

[일련번호 9]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체육회 보조사업 운영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인천광역시(0000과), 인천광역시 체육회(△△△△부)

내 용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2019년 세입예산 총괄표에 따르면 [표1]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액 49,422,393천원 중 93.3%인 46,100,028천원을 시비 보조금을 세입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군·구 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1] 2019년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총계	49,422,393	100	50,192,247	100	
시보조사업	46,100,028	93.3	47,921,420	95.5	
국고보조사업	3,254,365	6.6	2,205,827	4.4	
자체부담금사업	68,000	0.1	65,000	0.1	

이에 인천광역시 0000과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규정에 따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재교부해주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숙지시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정산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고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

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통장을 사용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해야 하며 반환 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로써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1개의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OOOO과에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OOOO과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반납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표2]와 같이 103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종료 후 60일이 경과(1일부터 184일까지)하여 인천광역시 OOOO과에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표3]과 같이 보조사업별 1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1개의 통장에 여러 사업의 보조금을 관리함에 따라 사업별 이자 계산이 불가능하여 [표4]와 같이 보조사업별 집행잔액이 상당함에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표5]와 같이 통장잔액(이자액)이 남아있었으며, 군·구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재교부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통장 사용 및 이자 반납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천광역시 OOOO과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 시 2017년도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통장 관리현황과 이자 미반납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이자분을 일부분(566,449원) 환수 하였으나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이자 부분에 대한 정산 및 반납 처분 없이 정산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정산 기한 준수에 대해 매년 점검을 통해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정산기일 미준수에 대한 페널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표2] 보조사업 정산기간 초과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단체명	예산액	종료일	정산일	초과일
103개 사업					
OOO OOOO회 OOOOO대회	OO연맹	15,000	17.03.01.	17.05.17.	16
제OO회 OOOO기 OOOO대회 및 제OO회 OOOOOO대회	OO연맹	28,000	17.07.09.	18.01.05.	118
제OO회 OOOOOO배 전국 OOOOO경기대회	OOOOO연맹	37,000	17.07.15.	18.01.23.	130
2017년 OOOOOO배 OOOOO OOO대회	OOOO협회	11,400	17.09.16.	18.01.25.	70
OOO 제OO회 OOOOO대회	OO연맹	4,320	17.09.16.	18.02.20.	96
제OO회 OOOOOO배 OOOO대회	OO협회	22,400	17.09.17.	18.01.26.	70
제OO회 OOOOOO기 OOOO대회	OOOOO협회	22,500	17.10.29.	18.02.14.	47
제OO회 OOO배 OOOOO OO대회	OO협회	14,300	17.11.18.	18.02.02.	15
2017년 OO OOOOO OOO대회	OOO협회	100,000	17.05.21.	17.10.27.	98
2017년 OOOOO OOOO대회	OO협회	170,000	17.04.23.	17.09.12.	81
2017년 OOOOO대회	OO협회	34,200	17.08.20.	17.10.27.	7
OOO OOOO OO교실	OO OO회	15,000	17.07.31.	17.12.18.	79
OOO OOOO OO교실	OO OO회	15,000	17.07.31.	17.12.18.	79
OOO OOOO OO교실	OO OO회	20,000	17.07.31.	17.12.18.	79
OOO OOO OOOO 프로그램	OOOO회	30,000	17.11.30.	18.02.28.	29
제OO회 OOOOO기 OOOO대회	OO협회	30,000	17.11.05.	18.02.07.	33
제OO회 OOOO기 OOOO대회	OO회	2,500	17.05.14.	17.08.11.	28
제OO회 OOO배 OOOO 대회	OOOO협회	3,000	17.05.26.	17.08.09.	14
2017 OOOO OOOO대회	OO연맹	2,000	17.06.18.	17.09.07.	20
OO OOO OOOO대회	OO회	50,188	17.05.27.	17.11.01.	97

사 업 명	단체명	예산액	종료일	정산일	초과일
제00회 00000기 00대회	00연맹	5,000	17.04.02.	17.06.27.	25
제0회 00000 00대회	00협회	8,000	17.06.04.	17.08.07.	3
제0회 00000배 00대회	00연맹	5,000	17.05.20.	17.08.25.	36
제0회 00000 000대회	000협회	5,000	17.05.27.	17.08.04.	8
제0회 00000기 0000 00대회	00협회	5,000	17.11.14.	18.01.22.	8
제0회 000 00대회	00협회	9,000	17.03.28.	17.08.02.	66
제0회 0000 0000대회	0000협회	9,000	17.03.18.	17.07.22.	65
제00회 0000배 00대회	00협회	7,000	17.04.30.	17.08.02.	33
제0회 000배 0000대회	000협회	5,000	17.04.22.	17.11.01.	132
제0회 0000기 0000대회	0000협회	4,000	17.06.23.	17.10.17.	55
제0회 0000배 00대회	00협회	3,500	17.05.20.	17.09.01.	43
제0회 00배 0000대회	00연맹	5,000	17.05.27.	17.09.01.	36
제0회 000배 0000대회	0000협회	3,500	17.10.28.	18.01.29.	32
2017 000배 0000대회	00협회	5,000	17.07.09.	17.10.27.	48
제0회 00배 00대회	00연맹	5,000	17.10.15.	18.01.22.	38
제0회 000배 0000대회	00연맹	5,000	17.06.25.	17.11.01.	68
제00회 000기 0000대회	00협회	5,000	17.09.30.	17.12.22.	22
제0회 000 0000대회	00000연맹	3,000	17.09.02.	17.12.20.	48
제0회 00기 00대회	00회	3,500	17.09.23.	17.12.20.	27
제0회 000배 00대회	00협회	4,000	17.09.24.	17.12.20.	26
제00회 00기 00000대회	00회	5,000	17.09.24.	18.01.02.	39
2017 000기 0000대회	0000협회	3,500	17.09.30.	17.12.20.	20
제0회 00배 0000대회	00000연맹	3,500	17.10.29.	18.01.04.	6
제0회 000배 0000대회	000000 협회	3,500	17.10.17.	18.01.02.	16
2017년 000기 00대회	00협회	5,000	17.11.06.	18.01.26.	20
000 00 0000대회	00연맹	15,000	18.03.01.	18.11.01.	184
000 00 제00회 0000대회	00연맹	4,320	18.09.15.	19.01.14.	60
제0회 000기 000대회 및 제0회 0000대회	00연맹	28,000	18.07.22.	19.01.09.	109
제00회 00배 0000 000대회	00협회	14,300	18.11.17.	19.03.29.	71

사 업 명	단체명	예산액	종료일	정산일	초과일
제0회 0000대회 및 제00회 0000대회	000000 협회	25,500	18.03.21.	18.07.17.	57
제0회 0000대회 및 0000대회	000연맹	47,500	18.09.14.	18.12.12.	28
000 제00회 0000대회	00협회	60,000	18.09.16.	19.03.20.	126
제00회 000기 0000대회	00연맹	45,000	18.03.09.	18.07.27.	79
제0회 0000배 00대회	00협회	9,600	18.01.08.	18.03.20.	12
제00회 00000배 000000대회	0000협회	11,400	18.10.28.	19.01.29.	32
제0회 00000배 000000대회	00협회	24,600	18.07.08.	18.11.19.	72
0000배 000000대회 및 00000000대회	000000대회	37,000	18.07.14.	18.11.23.	70
2018년 00 0000 000000대회	00협회	100,000	18.05.20.	18.12.26.	159
00000000 00교육	00회	20,000	18.09.30.	19.01.09.	40
000 000 0000 프로그램	000000회	18,000	18.11.30.	19.03.03.	32
000 00 00 0000	000000회	48,000	18.09.30.	19.03.03.	93
00 0000 000	00회	382,500	18.05.13.	18.11.08.	118
0000 0000 000 개최(0000000기)	00협회	130,000	18.04.08.	18.08.07.	60
제0회 00배 0000대회	0000협회	4,500	18.09.29.	18.12.13.	14
제0회 00배 0000대회	000000협회	5,500	18.10.05.	19.01.03.	29
제0회 00배 00대회	00협회	8,000	18.04.01.	18.07.11.	40
제0회 00기 0000대회	0000협회	11,000	18.03.18.	18.05.28.	10
2018 0000배 00대회	00연맹	2,500	18.08.11.	18.11.05.	25
2018 0000배 000대회	000협회	2,500	18.08.19.	18.11.06.	18
제00회 00배 00대회	00협회	4,500	18.08.12.	19.01.04.	84
제00회 00배 00000000및 000 대회	000연맹	6,000	18.04.08.	18.06.19.	11
제0회 00배 000000 000000대회	000000연맹	3,000	18.06.30.	18.09.20.	21
제00회 00기 00대회	00협회	5,000	18.10.28.	19.01.04.	7
제0회 00배 00대회	00협회	6,000	18.09.02.	18.11.09.	7
제00회 00기 00대회	00협회	6,000	18.09.15.	18.12.05.	20
제00회 00기 00대회	00협회	11,000	18.03.28.	18.05.29.	1
제0회 00배 00대회	00연맹	5,000	18.06.02.	18.12.03.	123
제0회 00배 00 00대회	00협회	7,000	18.06.17.	18.09.19.	33

[표3] 보조사업 통장 중복 사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계좌번호	사업내역	예산액	비고
2019년	000-000-00000	2019년 00000000대회 외 1개	175,000	
	000-000-00000	제0회 00000배 00대회 외 10개	299,720	
	000-000-00000	000000 0000 외 111개	1,283,700	
	000-000-00000	2019 0000 0000 외 2개	548,000	
2018년	000-000-00000	2018 제0회 0000 00리그 외 103개	1,609,100	
	000-000-00000	000 0000 0000 외 3개	150,000	
	000-000-00000	2018 0000 0000 외 16개	1,043,620	
2017년	000-000-00000	제0회 00000배 00대회 외 16개	1,016,620	
	000-000-00000	000 00000전 외 96개	1,615,600	

※ 자료 출처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4] 보조사업 이자 미반납 사업 현황(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일	비고
합 계			2,940,000	2,254,517	685,514	684,342		
제0회 00000배 00000대회	19.7.10.~7.14.	000연맹	80,000	77,163	2,837	2,837	19.11.13.	
제00회 00000배 0000권 및 000대회	19.6.22.~6.23.	000연맹	5,500	4,295	1,205		미반납	
000000000	19.4.25.~4.28.	00회	382,500	348,794	33,706	33,706	19.11.14.	
제0회 0000기 000 0000대회 및 제00회 0000 0000대회	18.7.13~7.22.	00연맹	28,000	26,984	1,016	1,016	19.01.17.	
제0회 00000배 0000대회 및 20180000 0000대회	18.9.12.~9.14.	000연맹	47,500	45,165	2,335	2,335	18.12.14.	
제00회 000기 0000대회	18.3.6.~3.9.	00연맹	45,000	40,566	4,434	4,434	18.11.14.	
0000000	18.1월~12월	00회	194,000	160,684	33,348	33,381	19.02.12.	이자 33천원
000 0000 000교실	18.4월~11월	00000회	1,500	0	1,500	1,500	19.02.21.	
0000 0000 000교실	18.4월~11월	00000회	2,000	0	2,000	2,000	19.02.21.	
2018 0000회	18.5월~12월	00 등	30,000	27,369	2,631	2,631	19.01.16.	
2018 000 000000 00전	18.6월~12월	00 등	30,000	25,000	5,000	5,000	19.01.16.	
0000대	18.2월~12월	00회	50,000	18,469	31,531	31,531	19.02.13.	

사업명	사업기간	단체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일	비고
2018 제0회 0000 00리그	18.4월~12월	00회	500,000	332,226	167,773	167,773	19.02.19.	
000 000 0000프로그램	18.6월~11월	00000회	18,000	16,000	2,000	2,000	19.03.28.	
0000000000	18.5.10.~5.13.	00회	382,500	330,836	51,664	51,664	18.12.06.	
00000000대회 개최 (000000대회)	18.8.14.~8.19.	00협회	30,000	26,400	3,600	3,600	19.01.22.	
제00회 0000000000대회	18.7.28.~7.30.	00연맹	3,500	2,085	1,415	1,415	18.09.03.	
2017 0000회	17.5월~12월	00 등	30,000	25,455	4,545	4,545	18.04.17.	
0000대	17.7월~12월	00회	50,000	27,190	22,810	22,810	18.04.19.	
00000000전	17.7월~12월	00회	500,000	218,045	281,955	281,955	18.05.30.	
000000지원	17.9월~12월	00000회	10,000	0	10,000	10,000	18.04.17.	
0000000000전	19.6.8.~6.11.	00회	420,000	406,499	13,501	13,501	17.10.17.	
00000000대회	19.9.23.~10.14.	00 등	100,000	95,292	4,708	4,708	17.04.24.	

※ 자료 출처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5] 통장잔액(이자액) 현황

[단위:천 원]

계좌번호	사업내역	예산액	통장잔액	비고
합 계		4,959,140,000	5,463,990	
000-000-00000	2019년 00000000000 대회 외 1개	175,000,000	959	
000-000-00000	제0회 00000배 00대회 외 10개	299,720,000	2,161	
000-000-00000	00000000 0000 외 111개	1,283,700,000	218,457	
000-000-00000	2019년 0000 00사업 외 2개	548,000,000	3,987,448	
000-000-00000	2018년 제0회 0000 00리그 외 103개	1,609,100,000	453,175	
000-000-00000	2018 0000 00사업 외 16개	1,043,620,000	801,790	

※ 자료 출처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함과 함께 [표6]과 같이 10개 군·구 체육회 및 68개 회원종목 단체 등에 매년 자체예산 수립 시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보조금을 편성 및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행 단체들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경기용품 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사업에 대하여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계속 유무를 심사하여야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관례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이다.

[표6] 시 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4,726,343	4,932,214	6,676,769	5,142,121
0000000 지원	시비보조	1,011,054	1,988,288	1,794,100	1,390,488
0000000지원 (0000지원비)	시비보조	478,200	395,500	561,000	532,000
0000 및 0000 지원	시비보조	734,500	623,470	469,420	474,720
000클럽	시비보조	0	0	194,000	194,000
00000 00사업	국고보조	2,502,589	1,924,956	3,658,249	2,550,913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붙임 1]과 같이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절차 이행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0000과장은

(시정)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납한 보조사업 이자액 5,463,990원에 대해 회수 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와 인천광역시 체육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시정)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납한 보조사업 이자액 5,463,990원에 대해 인천시 0000과로 반납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XX.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예산 전용 처리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전용 제한 목의 전용 실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예외 규정으로 「같은 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 예규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전용 및 변경의 제한 통계를 [표1]과 같이 명시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체육회 회계규정」 제18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각 부문예산 관리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보조금의 경우 사전 시 관계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1] 전용 제한 목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 원금상환 - 차입금 이자상환
- 예수금 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예산의 기본원칙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써 전용 및 변경을 시행할 때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용 사유, 제한 편성목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였어야 하나 [표2]와 같이 전용 제한 편성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하였다.

[표2] 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편성목	전용 전	전용 후	증감내역	일자	부서명	사유
00000 000	2,210	464	시설비 및 부대비	597	472	△125	15.8.2.	△△△△ △△부	000 000 구축
			자산 취득비	0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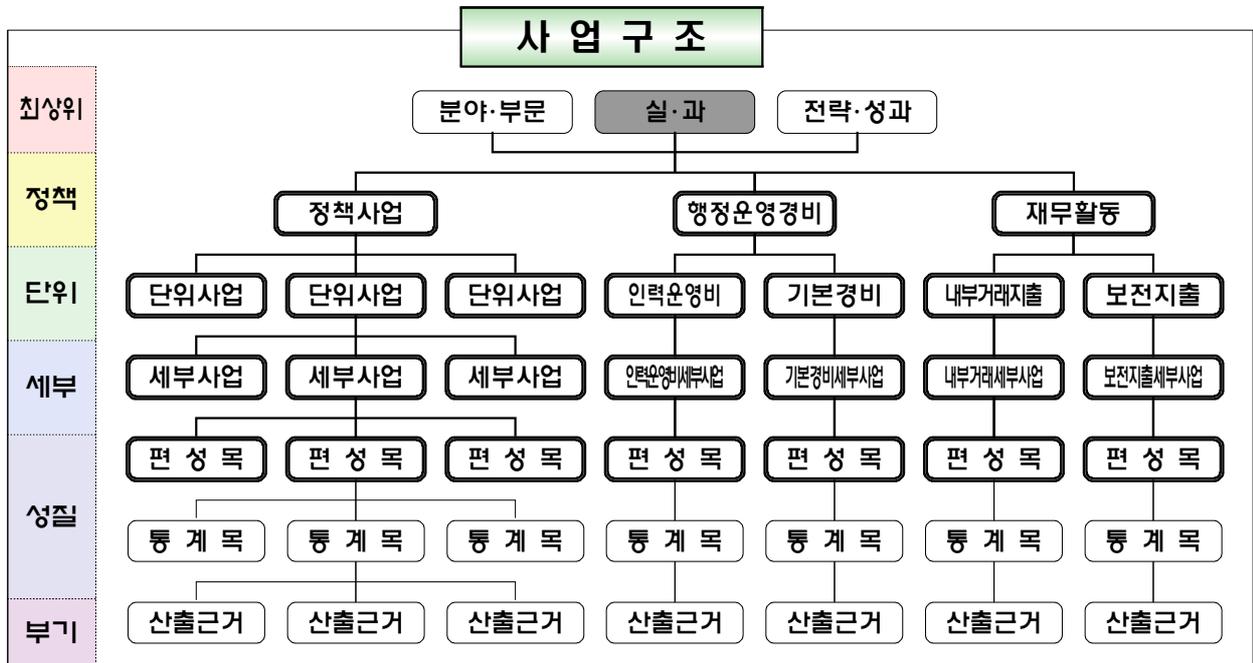
한편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하여 매년 사무처장 전결로 인천광역시 체육회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체육회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3조를 살펴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 전용금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표1]과 같이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업무추진비 등의 전용 및 변경을 제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0]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여 사업을 구조화하도록 되어 있고 [표3] 과 같이 사업구조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표3] 사업구조



또한 「같은 기준」 [별표11]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서 편성 시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체육회는 매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사업구조화 및 사업예산별 분류 등에 주의를 기울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표4]와 같이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 예산서를 작성하였다.

[표4]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오류 내역(△△△△부 제외)

부서명	세부사업명	편성목	비고
△△△△부	체육발전지원비	지원비	편성목 중 지원비는 없음. 민간이전으로 편성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목은 세부사업명을 행정운영경비로 변경
	물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는 목그룹명임. 부서운영비 등으로 변경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경상이전은 목그룹. 사업명으로 변경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자본지출은 목그룹. 사업명으로 변경
△△△△부	동계체육대회 강화 훈련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동계체육대회 대회 참가비	대회출전비	대회출전비를 여비로 변경
	동계체육대회 대회 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동계체육대회 대회 참가비	시상비	시상비를 포상금으로 변경
	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편성
	소년체육대회 참가비	대회출전비	대회출전비를 여비로 변경
	소년체육대회 참가비	시상비	시상비를 포상금으로 변경
	소년체육대회 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전국체육대회 예선대회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전국체육대회참가비	대회출전비	대회출전비를 여비로 변경
	전국체육대회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계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전국체육대회참가비	시상비	시상비를 포상금으로 변경
	지도자 및 선수육성	지도자육성비	지도자육성비를 인건비로 변경
	지도자 및 선수육성	선수육성비	선수육성비를 인건비로 변경
	체육발전비	지원비	편성목 중 지원비는 없음. 민간이전으로 편성
	체육회운동경기부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인건비로 변경
	우수선수유치비	유치비	편성목 중 유치비 없음.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
	인건비	인건비	세부사업명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
	인건비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인건비로 변경
	물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는 목그룹명임. 부서운영비 등으로 변경
	물건비	일반운영비	선수촌 보수공사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경상이전은 목그룹명임. 부서운영비 등으로 변경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목그룹명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	

부서명	세부사업명	편성목	비고
△△△부	인건비	인건비	세부사업명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
	물건비	일반운영비	물건비는 목그룹명임. 부서운영비 등으로 변경
	자본지출	자산취득비	자본지출은 목그룹명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0개 사업명	편성목에는 사업명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편성
	국내대회	전국체육대회	편성목에는 사업명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편성
	국제대회	2개 사업명	편성목에는 사업명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편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주의)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예규, 규정 등을 숙지시켜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영과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체육회 퇴직금 중간 정산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체육회 인사규정」 제60조에서는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과 시행령, 규정에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열거주의로 규정하여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급될 경우 실제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보존하기 어렵고,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퇴직

금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표1]과 같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중간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표1] 퇴직금 정산 시 필요서류

지급요건	필요서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무주택자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본인이나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요양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처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하지만 인천시 체육회에서는 [표2]와 같이 2017년 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및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

[단위:천원]

성명	생년월일	지출금액	지출일자	정산사유	제출서류	비고
-	-	-	19.12.03.	주택 구입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명의 ¹⁾ 만 가능
-	-	-	19.07.12.	가족 요양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제출
-	-	-	19.05.21.	전세금 납입	전세계약서	무주택자 여부 미확인
-	-	-	19.01.16.	전세금 납입	전세계약서	무주택자 여부 미확인
-	-	-	18.10.23.	주택 구입	매매 계약서	무주택자 여부 미확인
-	-	-	18.06.04.	주택 구입	매매 계약서	무주택자 여부 미확인
-	-	-	17.09.04.	주택 구입	분양 계약서	무주택자 여부 미확인

1) 신청인 000의 배우자 000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 체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주의)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정산 요건 등을 면밀히 파악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체육회 물품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물품분류번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 물품관리 규정」 제4조(물품관리체계)에 따르면 회장은 본회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둘 수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장부비치)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출력물이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는 [붙임1]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4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실시에 따라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체육회 물품관리 규정의 [붙임2] ‘별지 제6호 서식’인 재물조사서와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규정」 제32조(정기재물조사) 에 따라 2019년 6월 중 실시한 2019년 재물조사 결과 [표1]과 같이 장부 수량과 실제 전수조사 수량의 누적 과부족 24점¹⁾이 확인되었고 이에 과부족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 수량에 대한 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1] 2019. 6월 정기 재물조사 결과

[단위: 점, 백만원]

연도	장부수량	금액	실사상태				과부족		비고
			실사계	활용	불용대상		초과	부족	
					사용가능	사용불가			
2019. 6월	13,110	12,829	13,086	12,912	22	152	0	24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과부족 물품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재물조사 시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접탁자 17점, 이동형 파일서랍 7점

[붙임 1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카 드	
등록번호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전면)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		② 품 명		③ 규격	④ 단 위	⑤ 회계(계정) 분류		⑥ 정 수	⑦ 내용년수		⑧ 물 품 출납원(인)	⑨ 물 품 관리관(인)			
⑩ 년 월 일	⑪ 정 리 구 분	⑫ 단 가	⑬ 수 입 (수량 / 금액)	⑭ 출 급 (수량 / 금액)	⑮ 재 고 (수량 / 금액)	⑯ 운 용 (수량 / 금액)	⑰ 물품 출납 원 (인)	⑩ 년 월 일	⑪ 정 리 구 분	⑫ 단 가	⑬ 수 입 (수량 / 금액)	⑭ 출 급 (수량 / 금액)	⑮ 재 고 (수량 / 금액)	⑯ 운 용 (수량 / 금액)	⑰ 물품 출납 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년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누계	이기 사항								
		년월일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 별지 제6호 서식] (제32조 관련)

<u>재 물 조 사 서</u>							
① 부서별 :							
② 직 급 : 성명 : 인 . . 현재							
③ 일련번호	④ 물품분류 번호	⑤ 품 명	⑥ 규 격	⑦ 단 위	⑧ 금 액	⑨ 수 량	⑩ 비 고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이행보증보험 확보 및 최종하자검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계약체결 일자와 계약이행보증 담보기간 불일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거나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고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는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계약이행의 보증)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체결일까지 보증서 등을 제출 받아 계약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2017년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 이후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여 제출받은 사항이 있다.

[표1] 계약체결 일자와 담보기간 불일치 내역

[단위:천원]

계약명	업체명	계약 체결일자	담보기간	미 담보일	계약금	보험가입액 (선금급)
00000000 00000 임차	0000 주식회사	16.11.10.	17.02.01.~ 20.01.31.	83일	8,000	2,700
201700 0000 000 00000 000 000 00 000 선정	(주)0000000	17.04.18.	17.06.02.~ 17.07.11.	45일	269,765	134,000
0000000000 000000 구매	0000	17.07.26.	17.07.27.~ 18.07.26.	1일	12,107	242
000000000 0000000 0000 공사	(주)00000000	17.08.30.	17.08.31.~ 17.09.20.	1일	147,902	22,185
000000000 000 0000 00 000 00 설치	0000(주)	17.10.18.	17.11.06.~ 17.11.19.	19일	72,961	7,296
000000 00 000 0000	000000 000	17.11.21.	17.12.10.~ 17.12.30.	19일	4,000	17
000000 000000 0000 (00, 00) 용역	0000주식회사	17.12.26.	18.01.01.~ 18.12.31.	6일	382,835	57,425

※ 출처 : 인천시 체육회 제출 자료 재구성

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검사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체육회 회계규정」 제78조(하자검사)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담당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하자보수 최종완료확인서 요청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발급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14일 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경영지원부 주관으로 월 1회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기일을 따르지 않고 [표2]와 같이 118건에서 하자 만료 전 14일이 아닌 그 이전 날짜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완료 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2] 최종 하자검사 내역

[단위:천 원]

공사명	도금액	하자보증 만료일	만료 전 14일	하자 검사일	미 준수일
00000 및 000 0000 000 교체수정	1,700	18.01.30.	18.01.16.	18.01.08.	8
0000000 0000 조달구매	523	18.02.22.	18.02.08.	18.01.31.	8
0000000 00000 조달구매	460	18.02.27.	18.02.13.	18.01.31.	13
00000 0000 개선공사	4,845	18.02.27.	18.02.13.	18.02.07.	6
00000 0000 구입	2,970	18.02.26.	18.02.12.	18.02.09.	3
00000 0000 00구매	17,961	18.03.15.	18.03.01.	18.02.28.	1
0000 00000 0000 00 구입	24,554	18.03.28.	18.03.14.	18.03.02.	12
0000000 000 000 0000 구입	3,048	18.03.22.	18.03.08.	18.03.02.	6
0000000 00000 00000 구입	3,000	18.03.19.	18.03.05.	18.03.02.	3
0000 00 0000 수리	1,315	18.05.18.	18.05.04.	18.04.30.	4
제00회 00000000 0000	2,376	18.05.16.	18.05.02.	18.05.01.	1
00000 0000 0000 시공	1,980	18.06.22.	18.06.08.	18.06.04.	4
00000 0000 00공사	4,700	18.06.26.	18.06.12.	18.06.04.	8
00000000000 0000 수리	1,474	18.06.26.	18.06.12.	18.06.04.	8
00000000000 00000 00구매	784	18.07.23.	18.07.09.	18.07.02.	7
00000000000 000000 000 구입	1,650	18.07.19.	18.07.05.	18.07.03.	2
000000 00000 및 0000 랩핑	193	18.08.27.	18.08.13.	18.07.31.	13
000000 00000 보수공사	5,170	18.08.28.	18.08.14.	18.07.31.	14
00000000 0000 보수공사	9,900	18.08.29.	18.08.15.	18.08.01.	14
00000 0000 구매	900	18.08.21.	18.08.07.	18.08.01.	6
00000 000 00 설치	2,297	18.08.17.	18.08.03.	18.08.02.	1
00 00 00 및 000	1,998	18.08.25.	18.08.11.	18.08.02.	9
000 000 0000 사업 용품 구매	4,145	18.08.30.	18.08.16.	18.08.01.	15
2018년 000 0000 0000구매	2,200	18.08.30.	18.08.16.	18.08.13.	3

공사명	도금액	하자보증 만료일	만료 전 14일	하자 검사일	미 준수일
000 000 0000 00 000 구매	1,008	18.08.30.	18.08.16.	18.08.01.	15
00000 000 0000 공사	5,946	18.08.30.	18.08.16.	18.08.07.	9
00000 000 0000 공사	3,850	18.08.24.	18.08.10.	18.08.06.	4
00000 00 00000 0000 교체공사	2,613	18.09.19.	18.09.05.	18.09.04.	1
00000 0000 0000 구입	1,308	18.09.20.	18.09.06.	18.09.04.	2
000000 000 000000공사	1,980	18.09.25.	18.09.11.	18.09.05.	6
00000000 000 000 교체공사	1,980	18.10.26.	18.10.12.	18.10.02	10
00000000 0000 교체공사	9,900	18.10.19.	18.10.05.	18.10.02.	3
00000000 00000 조달구매	36,908	18.10.20.	18.10.06.	18.10.02.	4
000 000	3,694	18.10.27.	18.10.13.	18.10.01.	12
000000 000 보수공사	3,391	18.10.23.	18.10.09.	18.10.01.	8
000000 용품구입	1,544	18.10.17.	18.10.03.	18.10.02.	1
00000 0000 00000 교체공사	7,700	18.10.26.	18.10.12.	18.10.05.	7
00000 0000 00 보수공사	9,196	18.10.25.	18.10.11.	18.10.04.	7
000 00 및 0000 랩핑	4,829	18.11.30.	18.11.14.	18.11.05.	9
000 00000 0000 설치공사	7,349	18.11.26.	18.11.12.	18.11.08.	4
00000000 000 000 00공사	1,997	18.11.24.	18.11.10.	18.11.05.	5
00000000 0000 보수공사	1,750	18.11.23.	18.11.09.	18.11.08.	1
00000 000 0000 00 보수공사	9,720	18.11.30.	18.11.16.	18.11.08.	8
00000 0000 개선공사	8,750	18.11.21.	18.11.07.	18.11.06.	1
000000 000 00 교체 보수	1,448	18.12.14.	18.11.30.	18.11.26.	4
0000000 0000 000 설치공사	4,961	18.12.09.	18.11.25.	18.11.23.	2
00000000 0000 보수공사	4,929	18.12.09.	18.11.25.	18.11.23.	2
0000000 000000 보수공사	1,903	18.12.21.	18.12.07.	18.12.06.	1
0000000 00 보수공사	9,900	18.12.26.	18.12.12	18.12.06.	6
0000000 000 0000 정비공사	4,720	18.12.19.	18.12.05.	18.12.03.	2
000000 000 000 수거함	1,297	18.12.21.	18.12.07.	18.12.03.	4
0000000 0000 보수	1,925	18.12.25.	18.12.11.	18.12.06.	5
0000000 0000 조달 구매	3,852	18.12.19.	18.12.05.	18.12.04.	1
00000 0000 000 조달 구매	4,645	18.12.19.	18.12.05.	18.12.04.	1
000 구입	468	19.01.25.	19.01.11.	19.01.08.	3
000 구입	1,970	19.01.25.	19.01.11.	19.01.07.	4
0000000 0000 000 보수공사	1,778	19.02.25.	19.02.11.	19.01.25.	17
00000 0000 점검 및 000작업	5,800	19.02.14.	19.02.10.	19.01.28.	13
00000 0000 000 구입	1,400	19.03.18.	19.03.04.	19.02.28.	3
0000000 0000000보수	5,830	19.02.27.	19.02.13.	19.02.07.	6
00000 0000 0000 구입	2,980	19.03.29.	19.03.15.	19.02.27.	16
00000000 0000 00수리	1,298	19.03.15.	19.03.01.	19.02.27.	2
00000000 000 0000 방지 공사	7,700	19.02.17.	19.02.03.	19.02.01.	2
00000000 0000000 보수	1,350	19.03.27.	19.03.13.	19.03.08.	5

공사명	도금액	하자보증 만료일	만료 전 14일	하자 검사일	미 준수일
000000 0000 0000 보수	1,850	19.04.08.	19.03.25.	19.03.20.	5
0000000 000 000정비공사	2,880	19.04.01.	19.03.18.	19.03.15.	3
0000 000 00 및 00공사	9,430	19.03.24.	19.03.10.	19.03.07.	3
00000 0000 0000 설치공사	1,950	19.03.30.	19.03.16.	19.03.07.	9
00000 0000공사	9,260	19.03.21.	19.03.07.	19.03.05.	2
00000 0000 제작	1,280	19.04.18.	19.04.04.	19.03.28.	7
0000 용품 구입	3,179	19.04.06.	19.03.23.	19.03.22.	1
0000 00 00정비공사	8,200	19.04.26.	19.04.12.	19.04.09.	3
0000 000보수공사	9,164	19.04.29.	19.04.15.	19.04.10.	5
00000 000 구입	1,751	19.04.16.	19.04.02.	19.04.01.	1
0000 0000 00개선 공사	9,500	19.04.25.	19.04.11.	19.04.08.	3
00000 000000 조달구매	871	19.04.28.	19.04.14.	19.04.09.	5
0000 000 000 보수	1,430	19.05.02.	19.04.18.	19.04.17.	1
000000 000000 보수	682	19.04.26.	19.04.12.	19.04.11.	1
0000000 00000 단복	92,500	19.04.26.	19.04.12.	19.04.04.	8
0000000 00000 00물품 구입	9,142	19.04.26.	19.04.12.	19.04.04.	8
0000000 000 00 000 구입	4,900	19.05.09.	19.04.25.	19.04.24.	1
0000 0000 0000 0000 00	1,860	19.05.02.	19.04.18.	19.04.17.	1
0000000 000 0000 교체	1,980	19.05.18.	19.05.04.	19.04.25.	9
000000 00000 0000 구입	495	19.05.03.	19.04.19.	19.04.18.	1
0000 0000 0000 000000	2,000	19.05.17.	19.05.03.	19.05.02.	1
00000000 0000000 등 교체공사	3,120	19.06.12.	19.05.29.	19.05.27.	2
000000 000 보수공사	2,200	19.07.25.	19.07.11.	19.06.24.	17
0000 0000 구매	1,280	19.08.10.	19.07.27.	19.07.25.	2
0000 수리	1,600	19.07.21.	19.07.07.	19.07.02.	5
000000 000 0000 설치공사	1,485	19.07.22.	19.07.08.	19.07.03.	5
00000 000 0000 00000 공사	7,942	19.08.30.	19.08.16.	19.08.06.	10
0000000 0000 0000 수리공사	1,980	19.08.30.	19.08.16.	19.08.05.	11
00000 및 000 0000 보수공사	9,500	19.08.20.	19.08.06.	19.08.05.	1
00000 0000 0000 0000 구입	11,057	19.08.16.	19.08.02.	19.08.01.	1
00000 000 000 000 수리	1,610	19.09.20.	19.09.06.	19.09.03.	3
00000000 00 00 구입	7,979	19.09.27.	19.09.13.	19.09.09.	4
00000000 000 00 보수공사	9,599	19.10.26.	19.10.12.	19.09.27.	15
00000000 000 0000 교체공사	17,621	19.10.12.	19.09.28.	19.09.25.	3
000000 000 조달구매	1,518	19.10.31.	19.10.17.	19.10.02.	15
0000000 000 000 00 교체	9,987	19.11.14.	19.10.31.	19.10.22.	9
00000 000 보수작업	1,485	19.10.30.	19.10.16.	19.10.15.	1
0000000 000 수리	790	19.10.31.	19.10.17.	19.10.10.	7
00000 000 00000 공사	5,100	19.10.30.	19.10.16.	19.10.10.	6
0000000 구입	1,737	19.10.30.	19.10.16.	19.10.15.	1

공사명	도금액	하자보증 만료일	만료 전 14일	하자 검사일	미 준수일
00000 000000 준설용역	8,268	19.10.23.	19.10.09.	19.10.04.	5
000000 000000 구입	2,400	19.11.09.	19.10.26.	19.10.22.	4
000000000 00 000 구입	4,600	19.11.21.	19.11.07.	19.10.21.	17
000000000 0000000 000 000	1,991	19.11.26.	19.11.12.	19.10.17.	26
000000 000000 00 00	1,920	19.11.21.	19.11.07.	19.10.22.	16
000000 00 000 구입	4,600	19.11.15.	19.11.01.	19.10.22.	10
00000 00000 구입	1,859	19.11.25.	19.11.11.	19.10.22.	20
00000 00000 00피복	2,856	19.11.07.	19.10.24.	19.10.21.	4
00000 외 1종 구입	1,700	19.11.29.	19.11.15.	19.11.11.	4
00000 0000 0000 준설용역	8,000	19.11.29.	19.11.15.	19.11.08.	7
00 00000 0000	2,518	19.11.23.	19.11.09.	19.11.05.	4
0000000 000 구입	10,100	19.11.19.	19.11.05.	19.11.04.	1
000000 0000 임차	7,128	19.11.21.	19.11.07.	19.11.02.	5
00000 000 0000 등 보수작업	1,400	19.11.26.	19.11.12.	19.11.11.	1

※ 출처 : 인천시 체육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주의) 앞으로는 계약 및 하자보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표창 대상자 심의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조직)4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으며 제46조(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회, 군·구체육회, 시종목단체, 군·구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는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를, 제14조(포상종류)에서는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 포상과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과 인천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제14조 포상의 종류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장 표창에 대한 영예성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인천광역시 시장 표창을 추천할 때도 인천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에 추천하여야 하나,

「같은 규정」 제16조(절차)에 정부 포상은 위원회를 거쳐 체육회장과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군·구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고 규정하여 정부 포상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후 추천하고 [표1]과 같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함에 있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 없이 내부 검토를 통해 추천하였는바 이는 [표2]와 같이 16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대전광역시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 표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도 자치단체장 표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1] 2017년 ~ 2019년 시장표창 수여자 명단(총 136명)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표2] 타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현황

기관명	규정 문구
서울특별시 체육회	제16조(절차) ② 타기관에 추천하는 체육상(표창)은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부산광역시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구·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대한체육회에 추천하고 체육회가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대구광역시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포상 및 대구광역시 포상추천자는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장, 구·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광주광역시 체육회	제13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상, 대한체육회 표창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제14조(포상절차) ① 포상은 체육회, 종목단체, 구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대전광역시 체육회	제16조(절차) ② 타 기관에 추천하는 체육상(표창)은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울산광역시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② 울산광역시장 포상은 위원회를 거쳐 시체육회장이 울산광역시에 추천한다.

기관명	규정 문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및 대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읍·면·동 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경기도 체육회	제16조(절차) ① 정부 및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등 포상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강원도 체육회	제16조(절차) ① 강원체육상을 제외한 모든 포상 은 본회 회장 및 회원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충청북도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포상과 대한체육회 및 충청북도(의회)표창 은 도종목단체의 장과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충청남도 체육회	제16조(절차) ②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포상 및 표창은 관련 조례 및 당해 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추천한다.
전라북도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및 전라북도 등의 포상은 본회, 도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전라남도 체육회	제16조(절차) ① 정부 및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등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경상북도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도 포상 은 위원회를 거쳐 도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경상남도 체육회	제16조(절차) ① 정부 및 자치단체 포상 은 도체육회의 장, 도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본회, 회원종목단체의 장, 시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개선) 향후 인천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장 표창 추천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타시도 사례 및 제도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 권고

제 목 재정 운영, 경영합리화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

관 계 기 관 □□●●부(△△팀, ▮▮팀), ▮▮▲▲부(○○○○팀), ▮▮▮▮
 □□부(▲▲·▮▮▲▲▲팀)

내 용

1.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

가. 재원 구성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41조, 제42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체육회 회계규정」 제6조, 제20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기금 등으로 하고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세입예산 사업별 구성비 현황

(단위: 천원)

회 계 구 분	2018년도 예산액		2019년도 예산액		증감(B-A)
	예산액	구성비(A)	예산액	구성비(B)	
계	57,044,567	100	56,434,250	100	
일반회계	50,192,247	87.99	49,422,393	87.58	-0.41
시비보조사업	47,921,420	84.01	46,100,028	81.69	-2.32
국고보조사업	2,205,827	3.87	3,254,365	5.77	1.9
자체부담금사업	65,000	0.11	68,000	0.12	0.01
특별회계	6,852,320	12.01	7,011,857	12.42	0.41
체육진흥기금	3,716,255	6.51	3,481,583	6.17	-0.34
체육발전기부금	1,619	0	1,619	0	0
전국체전격려금	124,472	0.22	117,668	0.21	-0.01
임원회비	138,106	0.24	32,454	0.06	-0.18
퇴직적립금	2,712,868	4.76	3,187,809	5.65	0.89
인천스포츠클럽회원회비	159,000	0.28	190,724	0.34	0.06

2019년도의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총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부담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시비보조금이 87.46%(시비보조금: 81.69%, 국고보조금: 5.77%)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2]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시비보조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세 부 사 업 내 용
시비보조사업	46,100,028	
민간경상보조	14,738,044	
체육육성사업	9,490,240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대회출전비, 강화훈련비 등 체육진흥사업 (체육회 운동경기부 운영, 회원단체 지원, 지도자 및 선수 육성, 우수선수유치 등
스포츠클럽	194,000	스포츠클럽운영 지도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생활체육활성화	1,355,488	생활체육교실운영,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운영 (42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15개), 종목회장기대회 운영(41개)
국내 및 국제대회	782,220	국내대회 개최 (14개), 국제대회 개최 (5개)
사무처 운영	2,916,096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민간위탁금	31,361,984	
시청운동경기부	8,549,200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체육시설운영	22,812,784	○○○체육관 등 12개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특별회계는 체육진흥기금, 체육발전기부금, 전국체전격려금, 임원회비, 퇴직적립금, 인천스포츠클럽회원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6.17%, 퇴직적립금은 5.65%를 차지하고, 나머지 재원은 낮은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다.

체육회의 재정은 국·시비 보조비 등 외부 의존율이 매우 높은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의 성격상 자체 수입 재원이 기부금, 격려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설 운영 경쟁력 강화, 재정 독립 기반 조성을 통해 자율적, 안정적으로 각종 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인천광역시(☒☒☒☒과)와 체육회 간에 시청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매년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하였다

따라서, 재정 운영, 자금의 구분 및 집행 절차를 고려할 때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재원인 시비가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1) 민간위탁금(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비, 체육시설위탁관리비)를 표 3, 4와 같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가 결산 시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 자금은 매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회계 · 사업별 예산 규모 비율

(단위: %)

구 분	편 성 목	사 업 명	2018예산	2018결산	2019예산
		비율	100.00	100.00	100.00
일반회계			32.22	87.99	87.58
	시비보조사업		28.24	84.01	81.69
	민간위탁금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14.49	15.15
		체육시설위탁관리		41.28	40.42
특별회계			67.78	12.01	12.42
	민간위탁금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14.49		
		체육시설위탁관리	41.28		

[표 4] 연도별 사업계좌 현황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좌번호	개설일	해지일	계좌번호	개설일	해지일	계좌번호	개설일	비 고
●●●● ◆◆ 부	○○○-● ●-○○	'17.1.3	'18.7.10	○○○-● ●-○○	'18.3.7	해지여정	○○○-● ●-○○	'18.12.31	사용중
◆◆△△ 위탁운영	○○○-● ●-○○	'17.1.3	'18.7.10	○○○-● ●-○○	'18.3.7	해지여정	○○○-● ●-○○	'18.12.31	사용중

다. 특별회계 수입, 일반회계 전출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회원종목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사무처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은 기금 조성 목적 및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체육진흥기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를 표 5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체육육성사업비(전국체육대회 참가비 및 체육회운동경기부의 일반수용비, 체육회 사무처 운영 일반수용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등)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당 사업 내용에 따라 일정 규모를 편성하고 있으나 시비 보조금으로 미반영된 사업비 또는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가급적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긴축하여 사용하고 체육진흥기금 발생이자는 적립 등을 통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사용일자	사 용 액	사 용 내 역
2015	2.10	195,074,000	201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2016	2.11	804,990,115	2016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2017	2.22	86,000,000	201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2018	2.22	65,000,000	2018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2019	2.22	65,000,000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12	3,000,000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미입금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가. 세입구조

(1) 일반회계 중 체육시설위탁관리비 비중 (47%)

2016년도 ~ 201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중 체육시설위탁관리 사업비가 4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87.58%, 특별회계 12.42%이고 예산 비중이 높은 3개의 사업(체육시설위탁관리 40.42%, 체육육성사업지원 16.82%,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사업 15.15%)이 72.3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위탁관리비의 증감 추이, 운영수지율, 수입목표액 달성률과 세입(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6] 회계 · 사업별 예산 규모 비율

(단위: %)

구분	편성목	사업명	2019예산	2018예산	2018결산
			100.00	100.00	100.00
일반회계			87.58	32.22	87.99
	시비보조사업		81.69	28.24	84.01
		민간경상보조			
		체육육성사업지원	16.82	17.66	17.66
		인천스포츠클럽사업	0.34	0.34	0.34
		생활체육활성화지원	2.40	0.82	3.44
		국내및국제대회지원	1.39	0.82	0.8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처운영비보조	5.17	5.98	5.98
		민간위탁금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15.15		14.49
		체육시설위탁관리	40.42		41.28
	국고보조사업		5.77	3.87	3.87
	자체부담금사업		0.12	0.11	0.11
특별회계			12.42	67.78	12.01
		민간위탁금			
		시청운동경기부위탁운영		14.49	
		체육시설위탁관리		41.28	
	체육진흥기금		6.17	6.51	6.51
	체육발전기부금		0	0	0
	전국체전격려금		0.21	0.22	0.22
	임원회비		0.06	0.24	0.24
	퇴직적립금		5.65	4.76	4.76
	인천스포츠클럽회원회비		0.34	0.28	0.28

(2)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운영수지율(수입/지출)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인 체육시설운영 수탁비 지출액과 수입액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비교한 총수지율은 약 5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²⁾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2019년도는 11개의 시설 중 수지율이 50%를 넘는 시설은 3개소(○○○○,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 2019년도는 감소가 예상되고, 2018년도 ~ 2019년도의 지출은 증가한 결과 2019년도 수지율은 44%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2016년도 ~2018년도)간 결산액 기준으로 총 28,715백만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원인분석, 장기적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표 7] 체육시설 수지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

시설명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예상)		
	지출	수입	수지율	지출	수입	수지율	지출	수입	수지율	예산	수입	수지율
계	20,880	11,721	52.9	22,997	12,823	52.5	19,782	10,400	52.6	22,318	10,114	44
○○○○	2,711	1,161	42.8	2,926	1,237	42.3	2,809	1,470	52.3	3,279	1,435	44
◇◇◇◇	3,067	2,084	67.9	3,139	1,901	60.6	3,233	2,029	62.8	3,521	2,300	65
◆◆◆◆	840	190	22.6	863	165	19.2	988	205	20.7	1,069	265	25
□□□□	933	438	46.9	927	394	42.5	957	436	45.6	1,182	465	39
△△△	911	243	26.7	1,096	242	22.1	1,048	217	20.7	1,300	160	12
▲▲▲	2,701	1,711	63.3	3,202	2,119	66.2	3,561	2,660	74.7	3,904	2,200	56
☆☆☆	2,562	1,096	42.8	3,081	1,515	49.2	3,404	1,839	54.0	3,784	1,792	47
○●○	1,410	745	52.8	1,558	871	55.9	1,631	981	60.1	1,812	962	53
◇◇◇	2,466	1,982	80.4	2,667	2,140	80.3	880	459	52.2	1,006	421	42
◆◇◆							327	10	3.1	311	12	4
◎◇◇	813	89	10.9	871	99	11.5	944	94	10.0	1,150	102	9

인천광역시체육회 일반현황(체육회) (2016~2018/ 결산서), 2019 : 예산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

(3)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운영 수입 목표액 달성

최근 3년간 (2016년도~2018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체육시설별 수입현황은 표 8과 같고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체육시설 중 5개 시설(문학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경기장, 남동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만이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90%에 미달하는 시설은 올림픽국민생활관과 소규모체육시설이다.

[표 8] 체육시설별 수입 목표액 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목표액	발생액	달성률	목표액	발생액	달성률	목표액	발생액	달성률
○○○○	1,055	1,161	110	1,412	1,237	88	1,412	1,373	97.2
○○○○	2,360	2,084	88.2	2,268	1,901	83.8	2,268	1,939	85.5
○○○○	262	190	72	228	165	73	237	204	87.3
○○○○	400	438	109	445	394	88.5	445	435	95
○○○○	123	243	197	162	242	149	150	216	144
○○○○	1,209	1,711	141.5	1,619	2,119	131	1,900	2,658	140
○○○○	1,289	1,096	84.9	1,444	1,515	104.9	1,668	1,717	102.9
○○○○	794	745	93.75	874	871	99.65	917	957	104.4
○○○○							277	439	159
○○○○	1,789	1,982	111	1,924	2,140	111			
○○○○								9	
○○○○	258	89	34.5	258	99	39	102	94	92.2

2016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따라서, ○○○○○○○부(◇◇◇·◇◇◇◆◆◆팀)에서는 52%로 낮은 체육시설 운영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1) 종전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합한 개선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전문가 참여, 실태파악·진단 실시
- 2) 체육시설별 유사한 운영분야(내용), 관리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생산적인 인력 배치, 근무형태,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 3) 수입 목표액에 미달한 단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설 운영 여건, 프로그램 내용 등 따른 당초 목표액 설정의 적정 여부, 미달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표 9] 수입 목표액 미달 단위사업 현황

시 설 명	목표 대비 미달 단위사업 내용	비 고
○●◎	생활체육프로그램 76.7%, 패키지(수영장) 89.4%, 체육관사용료 96.6%, 공유재산임대료 44.8%	100% 미달
○●◎	수영장 90.1%, 헬스장 88%, 유아스포츠단 70.2%, 복합운동 51.4%, 프로그램실 85% 체육관 89.4%,	“
○●◎	가좌테니스 88.63%, 동춘인라인 72.09%, 다목적운동장 31.56%, 수봉궁도장 67.06%	“
○●◎	야구장 79%, 풋살구장 64%, 실내연습장 48%, Ing 야구장 65%	“
○●◎	사대사용료 92.8%, 실탄보관료 등 88.2%	“
○●◎	트랙장대관 0%, 풋살경기장 76%	100% 달성
○●◎	수영 88.56%, 헬스 99.22%	“
○●◎	대관 및 부속시설운영 99.4%	“
○●◎	공유재산임대 94.3%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4) 수입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환경 변화,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수영장(패키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입

-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할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설은 매년 3억~4억원 가량 할인금액이 발생하는 상황

○ 야구장 및 테니스장 등 기타 소규모체육시설 수입

- 우천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관 취소에 따른 수입액 감소와 관내 동종 유관시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

○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 공실 발생 시, 공개입찰로 낙찰자 선정에 최소 1개월 소요되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남

○ 사격장 사대사용료 및 실탄보관료 수입

- 전문 엘리트선수들이 감소하는 추세로 선수 이용이 감소하면서(○●◎) 이용료가 줄어들고 있음

나. 세출구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중 체육시설위탁관리비의 비율은 43% ~ 47%로 매우 높고 2019년도는 46%로 예상되므로, 체육시설운영비 증가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0] 일반회계 중 체육시설위탁관리비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계 (A+C)	회 계 구 분				비 고
		일반회계			특별회계(C)	
		예산액(A)	지출액(B)	비율(B/A)		
2016회계결산	421	399	187	47%	22	지출액
2017회계결산	449	443	207	47%	6	“
2018회계결산	471	465	202	43%	6	“
2019예산	564	494	228	46%	70	예산액

결산서 지출액, 예산서 기준

(1) 최근 3년간 비목별 비율 : 인건비 2.3% 증가, 경상이전비 3.5% 증가

연도별 총위탁비 중 비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자본지출비는 증가하였으나, 물건비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11] 체육시설위탁관리비 비목별 변동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증감(2016년대비)
계	100.0	100.0	100.0	
인 건 비	38.2	38.5	40.5	2.3
물 건 비	54.5	54.2	51.4	-3.1
경상이전	1.9	2.2	5.4	3.5
자본지출	5.4	5.0	5.9	0.5

(2) 비목별 체육시설별 증감

인건비는 조경관리 (152%), ●◎◇◇◇ (147%), ●◎◇◇◇ (135%) 순으로, 물건비는 ●◎◇◇◇ (142%), ●◎◇◇◇(125%), ●◎◇◇◇ (123%) 순으로, 경상이전비는 ●◎◇◇◇ (206%), ●◎◇◇◇ (205%), ●◎◇◇◇(186%)순으로 자본지출비는 ●◎◇◇◇ (578%), ●◎◇◇◇ (320%), ●◎◇◇◇ (295%) 순으로 증가하였다.

(3)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 7개소 / 총 15% 이상 상승

최근 3년간 (2016년도~2018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체육시설별 위탁비 총액 변동(증감) 상황을 보면 7개소(◇◎●○★, ◇◎●○★, ◇◎●○★, ◇◎●○★, ◇◎●○★, ◇◎●○★, ◇◎●○★)가 15% 이상 상승(연간 5% 이상)하였다.

[표 12] 체육시설위탁관리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연도별 총액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2016	2018	증감	2016	2018	증감	2016	2018	증감	2016	2018	증감	2016	2018	증감
◇◎●○★	2,711	2,809	104%	1,092	1,121	103%	1,260	1,327	105%	71	71	101%	288	290	101%
◇◎●○★	3,067	3,233	105%	1,439	1,559	108%	1,348	1,409	105%	61	79	129%	219	187	85%
◇◎●○★	933	957	103%	421	475	113%	420	456	109%	24	26	109%	68	0	0%
◇◎●○★	840	988	118%	554	640	116%	269	249	92%	0	0	-	17	100	578%
◇◎●○★	911	1,048	115%	152	142	93%	721	883	122%	38	23	61%	0	0	-
◇◎●○★	2,701	3,561	132%	974	1,314	135%	1,637	2,021	123%	45	84	186%	45	143	320%
◇◎●○★	2,562	3,405	133%	991	1,455	147%	1,386	1,736	125%	33	67	205%	152	146	96%
◇◎●○★	1,410	1,631	116%	272	363	133%	1,086	1,135	104%	20	42	208%	31	92	295%
◇◎●○★	2,466	880	36%	568	177	31%	1,732	650	38%	25	16	63%	141	36	26%
◇◎●○★	0	0	-		0	-		0	-		0	-		0	-
◇◎●○★	0	327	-		123	-		53	-		0	-		150	-
◇◎●○★	813	944	116%	496	529	107%	243	345	142%	40	44	110%	34	26	76%
◇◎●○★	323	436	135%	189	288	152%	110	127	115%	0	0	-	23	21	91%

(4) 체육시설위탁 관리비 경제적 운용

최근 급격하게 체육시설위탁관리비가 증가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일반운영비 낭비요인 점검, 물품 통합 구매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및 근무 형태 조정 등을 통한 적정 인력 운용으로 고정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하여

가. 자금운용에 대해

최근의 특별회계 재원별 세출예산 예산규모는 표 13과 같다.

[표 13]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	5,794,934	6,255,880	38,662,935	7,011,857
시비보조사업	-	-	31,810,615	-
체육진흥기금	4,217,873	3,744,616	3,716,255	3,481,583
체육발전기부금	68,000	78,975	1,619	1,619
전국체전격려금	115,445	150,987	124,472	117,668
임원회비	62,500	119,112	138,106	32,454
퇴직적립금	1,331,116	2,162,178	2,712,868	3,187,809
인천스포츠클럽회원회비		-	159,000	190,724

[표 14] 체육진흥기금 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

연 도	은 행 명	만기일자	예금종류	가입기간	이 율	금 액
2016	●●은행	'17. 2.10	정기예금	2년	2.08	2,000,000,000
		'17. 2.11	정기예금	3개월	1.27	355,416,000
		'17. 2.11	정기예금	3개월	1.27	61,987,360
			보통예금	-	-	7,741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운영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의하면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등 조성액 증가를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의 의견 및 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또는 2년~3년 단위의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정기예금 규모 및 예치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부(▷▶팀)에서는 별지 2와 같이 특별회계 자금을 운용 하면서 부서의견이나 자금 집행계획 없이³⁾ 2017년도에 체육진흥기금 355,416천원을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여 같은 시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1,650,196원의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5] 정기예금 이율 비교

(단위: 원)

정기예금액	예금기간	적용이율	이자수익	이자 차이 금액
355,416,000	3개월*4번	1.27%	4,513,784	1,650,196
	1년	2.05%	6,163,980	

3) 2016년도~ 201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체육진흥기금 지출 없음

나. 체육진흥기금 관리

(1) 사용절차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운영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의하면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체육회 회계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표 16] □□□□□□□□ □□□□□□□□ 자금 대여

대여금액 : 10억 원
대여방법 : 체육진흥기금 예금담보 대출 (금리 3.05%)
대여기간 : 2015. 10. 30. ~ 2016. 1.31. (3개월)
진행절차 :
- 2015. 10. 27. : 상임 이사회 안건 심의 의결 / 체육진흥기금 사용의 건(담보대출)
- 2015. 10. 29.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 - □□□□□□□□□□)
- 2015. 10. 30. : 예금담보대출 실행 및 자금 대여
- 2015. 11. 20. : 제11차 이사회 체육진흥기금 사용안건 보고

체육회에서는 □□□□□□□□ □□□□□□□□ (이하, “□□□□”이라 한다)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5.10.30. 체육진흥기금(2,000,000천원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1,000,000천원의 차입금을 3개월간 단기 대여를 하였다.

이후, □□□□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이 지연된다는(당초 상환 예정일: 2016. 1.31.) 통보에 따라 2016. 2.10.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2,019,215천원)에서 대출금(1,000,000천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55,416천원을 재예치하였다.

따라서, □□□□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했으면 미리 이사회에 “체육진흥기금 사용의 건(대출금 상환)”에 관한 의결을 거쳐 사용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부(▲▲팀)에서는 2016. 2. 1. ◇◇◇ 대여금 상환 지연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사회 의결 없이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였다.

[표 17] 체육진흥기금 예치 내역

(단위: 원)

연 도	은행명	만기일자	예금종류	이 율	금 액
2015	□□□은행	'17. 2.10	정기예금	2.08	2,000,000,000
		'16. 2.10	정기예금	2.05	2,019,216,000
		'16. 2.10	정기예금	2.05	141,190,115
2016		'17. 2.10	정기예금	2.08	2,000,000,000
		'17. 2.11	정기예금	1.27	355,416,000
		'17. 2.11	정기예금	1.27	61,987,360
			보통예금		7,741

[표 18] 체육진흥기금 사용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사용일자	사 용 액	사 용 내 역
2016	2.10	1,000,000,000	□□□□□□□□□□ ◇◇◇ 자금 대여
	2.11	804,990,115	2016년 일반회계 전출금

(2) 사후관리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2018년도 결산감사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조기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부(▲▲팀)에서는 ◇◇◇에 2016. 3.부터 2019. 11.까지 16차례 대여금 상환 독촉 문서를 발송하여 원금 등의 상환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요구 하면서 가압류 등을 예고하였으나 2019.12. 감사일 현재까지 상환이 되지 않고 있다.

[표 19] 체육진흥기금 대여·미수 현황

(단위: 원)

기준일자	대여일자	상환예정	대 여 액	상환지연금	총미수금액	비 고
2016.12.31	2015.10.30	2016.1.31	1,000,000,000	91,506,840	1,091,506,840	상환지연에 따른 손해금 연 10% ⁴⁾ 비율로 일할 계산
2017.12.31		미상환		100,000,000	1,191,506,840	
2018.12.31		미상환		100,000,000	1,291,506,840	
2019.12.31.		미정		100,000,000	1,391,506,840	

그 결과, 체육회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에 제약을 받거나 ◇◇◇은 2019.12.31.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약 391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무 협의, 이사회 의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특별회계 수입 관련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현황”과 2017~2019년도 “예산서의 기금 원금”을 비교하면 2018~2019년도에는 1,000,0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 원금으로 이월하고 이월금(“원금”)과 이자수입(“이월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세입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수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에 대한 대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앞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해 연도에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반복적으로 세입으로 반영하여 예산서상 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표 20] 체육진흥기금 세입 세출 비교

(단위: 원)

구 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 현황					예산서 기금 세입예산(천원)
	전년말 현재액	당해수입액	지 출 액	당해말 현재액	기금관리	
16회계연도	4,160,406,115	61,995,101	1,804,990,115	2,417,411,101	계 : 2,417,411,101 정가 : 2,000,000,000 정가 : 355,416,000 정가 : 61,987,360 보통 : 7,741	계 : 3,744,616 원 금 3,611,016 이 월 금 61,987 이자수입 71,613
			일반회계전출 804,990,115 ◇◇◇ 대여 1,000,000,000			
17회계연도	2,417,411,101	344,367,412	86,000,000	2,675,778,513	계 : 2,675,778,513 정가 : 2,610,316,000 정가 : 65,462,513	계 : 3,716,255 원 금 3,610,316 이 월 금 65,000 이자수입 40,939
			일반회계전출 86,000,000			
18회계연도	2,675,778,513	68,550,142	305,000,000	2,439,328,655	계 : 2,439,328,655 정가 : 2,370,316,000 정가 : 68,038,660 보통 : 973,995	계 : 3,481,583 원 금 3,370,316 이 월 금 68,039 이 자 수 입 : 5) 43,228
			일반회계전출 65,000,000 유선유치기금 240,000,000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이자율 적용)

5) 이월금 : 전년도 이자수입 이월액, 이자수입 : 당해연도 이자수입 예상액

다 체육발전기부금

(1) 관리6)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2017년도~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체육발전기부금은 특별회계로서 별도의 예금(◇◎●○★: 1,619,216원)으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유망선수 장학금 2건 총 7,000천원을 체육발전 기부금으로 받았으므로 체육발전기부금 예금으로 관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부(▲▲팀)에서는 체육발전기부금 예금으로 관리하지 않아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기부금 접수 현황에는 포함되었으나, 체육발전기부금 수입금(내역)에는 불포함되었으며 2018년도에도 체육발전기부금 예금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위반하여 2017년도 결산(수입), 2018년도 예산 및 결산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체육발전기부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7)

[표 21] 2017-2018 체육발전기부금 기부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부일자	기 부 처	금 액	비 고
체육발전기부금	2017. 1.19	☒☒☒▷▷ 스쿼어점	5,000,000	유망선수 장학금
	2017.10.16	△△△	2,000,000	우수선수 장학금

[표 22] 체육발전기부금 집행(관리) 현황

(단위 : 원)

체육발전기부금	예금종류	금 액	은 행 명	비 고
2017.12.31기준	◇◎●○★	1,619,216	☐☐은행	기부금7000,000원 체육발전기부금 외 별도 통장 관리중

207-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 사용

6) 2019. 2.13.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에 따라「전국체육대회격려금 운영규칙」,「체육발전기부금 운영규칙」은 폐지
 2019. 3.14. 제1차 운영위원회 임원회비 및 체육발전기부금 통합관리(안) 의결/ 체육발전기부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
 7)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예산 (이월액 1,619천원)

「체육발전기부금 운영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르면 기부금은 팀 창단 지원, 우수선수 육성 및 유치, 우수지도자 육성,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팀)에서는 2018.11.26. 2018년도 관내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 14명(학생선수 8명⁸⁾, 제○○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6명)에게 각 500천원 총 7,000천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향후 운영위원회에 안전 상정 등을 통해 기부 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전국체전격려금

「인천광역시체육회 회계규정」 제6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격려금을 수시로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전국체전 강화훈련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국체전 강화훈련 격려금 등 특별회계 사용 내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회계 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중복 지원이나 과대 지급의 상황도 우려된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전국체전격려금이 운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본회 소속 지도자 자녀 중 우리시에서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자녀 (기부목적 - □□□□ : 우수선수 장학금(□□□□), ●●● △△ : 기부 목적 미기재)

[표 23] 전국체전 격려금 세출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원)

회계연도	일반회계 (단위: 천원)	특별회계 (단위: 원)
○○○○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301 행사실비보상금 강화훈련기간 격려금 38,100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301 행사실비보상금 체전기간 현지격려금 76,200	세입액 : 184,007,552 지출액 : 88,570,000 - 전국체전 강화훈련 격려금 32,370,000 - 사전경기 격려금 : 6,740,000 - 전국체전 현지격려금 : 49,460,000 잔 액 : 95,437,152
○○○○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301 행사실비보상금 강화훈련기간 격려금 36,000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301 행사실비보상금 체전기간 현지격려금 78,000	세입액 : 147,529,236 지출액 : 16,542,200 - 전국체전격려금 : 14,900,000 - 전국체전및 시민대화합축제임직원평가회 1,642,200 잔 액 : 130,987,036
○○○○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301 행사실비보상금 강화훈련기간 격려금 36,000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301 행사실비보상금 체전기간 현지격려금 84,000	세입액 : 166,592,923 지출액 : 7,380,000 - 전국체전격려금 : 18,600,000 -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34,220,000 -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지출 21,000,000 잔 액 : 92,772,923
○○○○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301 행사실비보상금 강화훈련기간 격려금 36,000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301 행사실비보상금 체전기간 현지격려금 50,000	세입액 : 128,348,069 지출액 : 16,180,000 - 전국체전격려금 : 15,180,000 - 역도팀 특별격려금: 1,000,000 잔 액 : 112,158,069
○○○○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301 행사실비보상금 강화훈련기간 격려금 42,000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301 행사실비보상금 체전기간 현지격려금 50,000	전국체전격려금 117,668,000

4. 결산잉여금 관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43조에 의하면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세입 재원에 따라 인천광역시, ▶▶●Ⓜ회, 인천체육회로 반납하고 있다.

수입액 대비 반납액 비율은 ○○○○년도 4.5%에서 2018년도 5.5%로 증가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사업예산이 편성되거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4] 일반회계 결산잉여금 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액(A)	집행액(B)	이월액	반납액(C)	비율(C/A)
○○○회계연도	37,609	35,757		1,852	4.9%
○○○회계연도	42,049	39,937		2,111	5.0%
○○○회계연도	46,414	44,347		2,066	4.5%
○○○회계연도	50,261	46,481	1,044	2,735	5.5%

연도별 결산서

특별회계는 기금 등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입액 대비 이월액 비율(C/A)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집행액 또한 감소한 결과로서 수입액 증가를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5]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액(A)	집행액(B)	이월액(C)	비율(C/A)
○○○회계연도	6,992	1,509	5,482	78.4%
○○○회계연도	6,355	2,251	4,103	64.6%
○○○회계연도	5,307	677	4,629	87.2%
○○○회계연도	5,727	626	5,100	89.0%

연도별 결산서

5. 경영합리화에 대해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오랜 연혁, 사업, 조직에도 대부분 인천광역시로부터 사무위탁 및 시비보조금에 의해 체육시설운영, 종목단체 지원, ▶▷☒☒부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 배치 및 운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 체육시설 이용 수입 증대 및 프로그램 개발, 합리적인 보조금 사업지원, 자주 재정 확충 및 사업개발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자체 장·단기 계획 및 목표설정, 전문기관의 운영 평가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신설에 따른 민간 회장 체제 전환과 2015.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수의계약 → 입찰) 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민간 대비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7년 이후 인천광역시체육회 ●●■▣부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3개팀(▣▣⊕⊕팀, ⊕⊕▲▲팀, ⊕⊕팀)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 2.22. 「인천광역시 사무처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팀”을 신설하였다.

그런데도, ●●■▣부(◆◆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업무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내·외적 시스템 개선,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체육시설 수익구조 개선, ▣▣▣▣▣▣부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주의) 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② 재정 건전화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회 경영합리화 계획”, “체육시설 수익개선 계획”, “◎◎Ⓜ 대여금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별지 1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사용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금	사 용 내 역	비 고 (기금액)
○○○○	195,074	-체전기간 간담회비 4,000 -총감독활동비 3,000 -경기단체 운영지원비 127,500 -신문홍보비 및 광고시안비 29,400 -기타일반수용비 1,174 -사무실 리모델링 20,000 -사무용가구기입 등 10,000	4,354,290
○○○○	846,849 전출금: 804,990, 경기용기구 수입금: 41,859	- 간담회비 및 총감독활동비 255,799 - 체전기간 임차비 - 지도자육성비 - 경기단체보조금 350,602 - 체육발전지원비 - 체육회운동경기부 운영비 -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 240,450 - 자본지출(시설비 및 부대비)	4,217,873
○○○○	86,000	-체전기간 간담회비 3,000 -신문홍보비 및 광고시안비 26,400 -기타일반수용비 5,600 -사무처장협의회비 2,000 -업무수행활동비 24,000 -여비 25,000	3,744,616
○○○○	65,000	-신문홍보비 및 광고 26,400 -사무처장협의회비 2,000 -사무용가구 구입 10,300 -체전기간 간담회비 2,300	3,716,255
○○○○	68,000	-업무추진비 2,400 -신문홍보비 및 광고 26,400 -홍보물품 구입비 9,000 -기타일반수용비 13,200 -사무처장협의회비 2,000 -비품구입 등 15,000	3,481,583

별지 2

특별회계 자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

구 분	연 도	은행명	만기일자	예금종류	이 율	금 액
체육진흥기금	○○○○	■ ■	17. 2.10	정기예금	2.08	2,000,000,000
			16. 2.10	정기예금	2.05	2,019,216,000
			16. 2.10	정기예금	2.05	141,190,115
	○○○○		17. 2.10	정기예금	2.08	2,000,000,000
			17. 2.11	정기예금	1.27	355,416,000
			17. 2.11	정기예금	1.27	61,987,360
				보통예금		7,741
	○○○○		18. 2.22	정기예금	1.53	2,610,316,000
			18. 2.22	정기예금	1.53	65,462,513
	○○○○		19. 2.22	정기예금	2.02	2,370,316,000
			19. 2.22	정기예금	2.02	68,038,660
				보통예금		973,995
퇴직급여적립금	○○○○		16. 2.24	정기예금	2.12	250,000,000
			16. 2.24	정기예금	2.12	300,000,000
				자유예금		527,116,092
	○○○○		17. 3. 2	정기예금	2.12	450,000,000
			17. 3. 2	정기예금	2.12	400,000,000
				자유예금		579,789,325
	○○○○		18. 3. 2	정기예금	1.53	1,250,000,000
				자유예금		561,738,186
	○○○○		19. 3. 5	정기예금	2.06	1,500,000,000
				자유예금		894,409,452
전국체전격려금	○○○○			보통예금		95,437,552
	○○○○			보통예금		130,987,036
	○○○○			보통예금		92,772,923
	○○○○			보통예금		112,168,069
스포츠클럽회비	○○○○		19. 3.22	정기예금	2.12	73,000,000
				자유예금		47,724,747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시청·체육회 운동경기부 선수촌, 외부 숙소 운영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부(▼▼●●■)팀)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 ▲▲●●과

내 용

1. 「체육회 운동경기부」 선수의 선수촌 사용 및 외부 숙소 운영

가. 체육회 운동경기부 선수의 선수촌 사용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17조에 따라 정원 109명의 운동경기부(이하, “체육회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역 및 거주지 형태를 고려하여 숙소운영비(관리비, 공공요금)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 내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과)에서는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제2조, 제10조에 따라 정원 105명의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이하, “시청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리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총 48개실 규모의 운동경기부선수촌(이하, “선수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1] 선수촌 운영 현황⁹⁾

[단위 : 실, 명]

구 분	계	시청 운동경기부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도자실	조리원 휴게실
이용호실	48	23	23	1	1
이용인원	92	50(남38, 여12)	42(남 20, 여22)		

9) 2000.4. 시 ■■■과로부터 문학선수촌아파트 위탁 운영

이와 같이, 체육회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를 위해서 숙소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수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시청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이므로 선수촌의 입주를 허용하고자 했으면 먼저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2019.12. 현재 체육회에서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선수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근거없이 선수촌 중 23개실을 체육회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외부 숙소 운영

체육회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는 숙소운영비(관리비, 공공요금)의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외부 숙소를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는 없다.

[표 2] 외부 숙소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 속	종목명	인원	소 재 지	형태	계약기간	금 액	재 원	유원회상징
		계	16				252,000		
1	체육회	○○(남)	6	인천시 남구  로 541 번길25-28  빌라  호	전세	2019. 2.28 ~2020. 2.27.	90,000	기부금	2010.기부금 관리위원회
2	체육회	○○(여)	4	인천시 남구  동 354-1  빌라  호	전세	2017. 7. 5 ~2021. 7. 5.	62,000	市 예산	
3	체육회	○○(여)	6	인천시 남구  로 522-1  빌라  호	전세	2019. 7. 3 ~2020. 7. 2.	100,000	市 예산	

따라서, 숙소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외에 외부 숙소를 운영하고자 했으면 먼저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외부숙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재원은 자체 재원(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내부방침, 기부금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만으로 외부 숙소 3개 호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총 252,000천원(체육발전기부금: 90,000천원, 시비 보조금 : 162,000천원)을 사용하여 하키 선수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의 외부 숙소 운영 및 임차보증금 지원

가.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의 외부 숙소 운영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해서는 선수촌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 숙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청 운동경기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팀 창단, 타 지역 신규 선수 영입 및 훈련 편의를 위한 경기장 인근 숙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지원 근거 없이 표 3과 같이 외부 숙소 3개 호실(핸드볼 2개, 사이클 1개)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외부 숙소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종목명	인원	소재지	형태	계약기간	금액	재원	유원회상정	
		계	18					735,000		
1	시청	○○○	7	인천시 마추홀구 ○○○ 관교●어단지 ◆◆◆동 ○○●호	전세	2018. 4.11. ~2020. 4.10.	250,000	170,000	기금	'12 제2차 상임위원회
								30,000	기부금	
								50,000	市예산	
2	시청	○○○	6	인천시 마추홀구 ○○○ ○파트 <5동 ▶▶호	전세	2018. 2. 7 ~2020. 2. 6.	250,000	市 예산		
3	시청	○○○	5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2차/■동 ■호	전세	2018. 4.11 ~2020. 4.10.	235,000	220,000	기부금	'15. 제27차 기부금관리위
								15,000	市예산	

나. 외부 숙소 운영 임차보증금 지원

시청 운동경기부가 전체 사용하는 외부 숙소 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은 위탁기관인 인천광역시가 부담할 성격으로 재원은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임차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수촌 이외의 외부 숙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했으면 먼저 운영 지침 개정, 예산 확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부방침, 이사회, 기부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만으로 외부 숙소 3개 호실의 임차보증금으로 표 4와 같이 시비 보조금 315,000천원과 체육진흥기금 170,000천원, 체육발전기부금 250,000천원을 포함한 총 735,000천원을 사용하여 핸드볼, 사이클 선수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체육진흥기금, 체육발전기부금¹⁰⁾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숙 소	계 약 기 간	전세금	재 원	비 고
1	■▲아파트	2014. 1.15. ~2016. 1.14.	200,000	기 금 170,000	
				기부금 30,000	
		2016. 1.15 ~2018. 1.14	230,000	기 금 170,000	
				기부금 30,000	
				시보조금 30,000	
		2018. 1.15 ~2020. 1.14.	250,000	기 금 170,000	
기부금 30,000					
시보조금 50,000					
2	⊙⊙아파트	2015. 7.15 ~ 2017. 7.15	220,000	기부금 220,000	
		2018. 4.11 ~ 2020. 4.10	235,000	기부금 220,000 시보조금 15,00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개선) 「인천광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체육회 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외부 숙소 운영 및 임차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청(■□□□과장)은

(개선)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체육회 운동경기부 선수의 선수촌 사용 근거,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를 위한 외부 숙소 운영 및 임차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10) 2019. 2.13 체육진흥기금으로 통합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사업집행 총괄 관리 및 계약 업무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부(㉸㉸팀, ㉸㉸팀)
 관 계 부 서
 내 용

1.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가. 사업 예산편성 관련

2018년도 ~2019년도 체육시설 위탁관리 관련 공사 및 물품 집행 현황에 의하면 연말 2개월간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2018년도는 30.6%, 2019년도는 33.8%에 이르는 상황이다.

[표 1] 체육시설 운영 예산집행 현황 (11월~12월)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집행액			2019년도 집행액		
		연간	11월~12월	비율(%)	연간	11월~12월	비율(%)
계		1,239,725	379,941	30.6	1,964,064	663,698	33.8
○●◎팀	◇◆◆□□	197,715	56,983	28.8	336,502	12,943	3.8
	◇◆◆□□	27,692	17,179	62.0	608,340	460,196	75.6
	◇◆◆□□	86,959	23,882	27.5	65,794	17,543	26.7
○●◎팀	◇◆◆□□	305,205	104,841	34.4	299,003	68,834	23.1
○●◎팀	◇◆◆□□	171,104	87,529	51.2	284,410	84,761	29.8
	◇◆◆□□	111,928	10,354	9.3	102,445	1,617	1.6
○●◎팀	◇◆◆□□	138,209	5,557	4.0	97,110	16,214	16.7
	◇◆◆□□	200,913	73,616	36.6	170,460	1,590	0.9

연말 계약업무의 과중, 현장 감독 및 사업 관리 부실 우려,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동절기 공사나 이월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을 마치는 시기에 발주하거나 동절기까지 연장되는 상황이다.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정, 민원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목적,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나 공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한 공정(사업)은 통합해서 사전에 시설 점검 및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사업발주 및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집행 현황 관리

「인천광역시체육회 회계규정」¹¹⁾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에 따르면 예산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편성·이사회 의결을 받고 각 부서의 장은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종합심의·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실적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장은 당초 심의받은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관련기관 협의, 계약 및 입찰절차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예산관리자는 불필요한 사업 이월이나,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총괄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〇〇부(〇〇팀)에서는 매월 자금집행 현황을 관리(예산액, 세입액, 집행액, 잔액)하고 있으나 사업 발주 등 진행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향후,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발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한 월별 발주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인천광역시체육회 회계규정 제17조 예산 총괄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본회 각 부서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2.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9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¹²⁾안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고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용역: 1,000분의 1.3)과 지체일수(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¹³⁾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표 2]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단위: 원)

공사명	계약일	준공(납품)기 한	준공서류 제출일	준공 검사일	계약금	지체 상금률	지체일	부과일	지체상금	부족	
										일수	금액
☐☐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	'17. 7.21	'17. 8.23	'17. 9. 5	'17. 9. 6	43,105,700	0.05	14	-	301,740		
▲▲■■■■수영장 다이빙 트위스팅 벨트시스템구매 설치	'17.10.18	'17.11.19	'17.11.24	'17.11.29	72,961,060	0.08	10	5	291,840	5	291,840
☒☒경기장비점 오염저감시설 준설 용역	'18.10.10	'18.10.17	'18.10.24	'18.10.31	8,344,000	0.13	14	7	75,930	7	75,930
■■■■경기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18.10.12	'18.11. 4	'18.11. 5	'18.11.5	42,059,000	0.05	1	-	21,030		

따라서, “☉☉☐☐☐■■■■■■ 다이빙 트위스팅 벨트시스템구매 설치 등 2건”은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준공서류제출일까지 지체일수로 계산하여 각각 5일과 7일을 부족하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 ◎◎◎경기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총 690,54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12)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1. 마, 2) “용역수행기간을 지나서 용역 목적물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용역수행기간의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3. 대가지급 지연 이자 지급

가. 준공검사 실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끝내고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¹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¹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준공계(준공검사원) 등을 받고서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접수하였으며, 검사를 완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전화로 통지하면서 계약담당자에게 일부 검사결과를 지연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준공계 제출 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대금 지급 청구서를 동시에 받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공사·물품·용역 건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실제 계약이행 기간 내 공사준공, 용역완성, 물품납품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계 제출일, 준공검사 완료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계를 검토하여(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하고 빠진 서류는 보완) 문서를 당일 등록하고 검사 완료 당일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통보)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4) 지계법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 경우” 등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정,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대가지급 청구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표 3] 대가지급 지연 이자 지급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준공일자	청구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연 일수	연 체 이자율	지급이자
								209,308
국민생활관공조기 및 온수탱크 보수공사	74,007,960	'16. 8.19	'16.10.5	'16.10. 5	'16.10.25	13	6%	158,158
체육회 춘계 피복 구매	23,241,240	'17. 4. 3	'17. 3.14	'17. 4.17	'17. 4.25	1	6%	3,820
경기장 보일러 수질관리용청관제구매	6,800,000	'17.10.27	'17.11. 3	'17.11. 3	'17.11.13	3	6%	3,353
단복 구매	5,590,000	'18. 3.29	'18. 3.29	'18. 4. 3	'18. 4.11	1	6%	919
전자표적 시스템 운영소모품 구매	66,915,500	'18. 6.22	'18.10.12	'18.10.17	'18.10.31	7	3%	38,499
인천시청 훈련 용품 구매	8,400,000	'18. 9. 7	'18. 9.14	'18. 9.18	'18.10. 1	3	3%	2,071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매	6,050,000	'19.10.24	'19.11. 1	'19.11. 1	'19.11.13	5	3%	2,486

그런데도, 국민생활관 공조기 및 온수탱크 보수공사 등 7건의 계약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13일을 지연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총 209,3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검사 담당자)는 검사 결과 및 대가 청구를 안내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가청구 서류는 당일 접수하여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시정] ■■●●부(○○팀)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공사 등의 사업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연도말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팀)에서는 준공검사, 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서접수 및 처리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공사 등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690,540원을 부과·징수하고, 대가 지연에 따른 이자 209,308원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업무 수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제 목 제한경쟁 입찰 업무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부(□□팀)

관 계 부 서

내 용

1. 「체육시설 이용 시스템」 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시행 2019.10. 8.)(이하, “예규”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입찰이 원칙이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적제한(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은 물품, 용역¹⁶⁾인 경우에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해당 계약 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지역제한은 일반용품·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3.1억 원)인 경우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또한, 제한입찰 시 2개 항목¹⁷⁾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6)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17) 1. 동일실적, 2 기술의 보유상황, 3.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4. 지역제한 5. 설비제한 6.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 7. 물품의 납품 능력 8. 중소기업자 9. 벤처기업 10. 소상공인 11. 소기업 12. 중소기업창업자

1.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따라서, 제한 입찰 기준에 맞게 실적제한,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중복으로 제한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실적제한 적용 시 “   종합스포츠타운 온라인 대관 예약 및 관리시스템” 등 4건(연번 1~4)은 해당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 이내가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여 1배수 이내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되었으며, “   종합스포츠타운 온라인 대관 예약 및 관리시스템” 등 3건(연번 1~3)은 최근 3년 간 공공체육시설 실적으로 제한하여 3년 이상, 민간의 실적을 제외하였다.

[표 1] 체육시설 이용 시스템 구축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입찰	사 업 명	내 용	기초금액	입찰참가자격	입찰참여
1	15.4	    종합스포츠타운 온라인대관 예약 및 관리시스템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34,980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 면 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제한: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및 무인발권시스템 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 납품실적	2개사
2	15.11	      전자키 시스템 구축	중앙제어 락커 시스템 설치 등	125,000	면 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제한: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에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 실적(중앙제어 락커시스템과 모바일 전자키발권시스템 구축 필수) 130,000천원 이상	2개사
3	16.3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출입제어시스템 구축 등	55,900	면 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제한: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에 무인발권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단일건으로 50,000천원 이상 납품실적	3개사
4	16.3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88,900	면 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제한: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유선으로 동작 되는 무인발권시스템 및 출입통제시스템과 호화 연동되는 통합회원운영관리시스템 80,000천 이상 납품실적	3개사

또한, “○○○○ 종합스포츠타운 온라인 대관 예약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연번 1)은 1) 인천광역시 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하였고, 2) 항목 2개(지역제한, 실적제한)를 중복하여 제한하였다.

2.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 제한 입찰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시·도 지역에서 계약 목적물이 일반용역·물품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¹⁸⁾ 범위내에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금액 기준은 예규 개정에 따라 2015년도 ~2019년도 까지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3.1억 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용역 입찰 시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말고 입찰공고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2016년도는 “○○○ 경기장 경비, 청소, 보일러 관리용역” 등 7건, 2017년도는 “△△△△◆◆◆◆ 청소, 경비, 기계실 관리용역” 등 5건의 기준금액 이상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부적정하게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8년도에는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관리” 등 5건의 용역을 지역제한 없이 하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등 적정하게 입찰을 실시하였다.

1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15. 3. 9. 시행, 행자부 예규 제16호)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예규(2017. 7.26.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추정가격 3.2억원 미만, 예규(2019.10. 8.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표 2]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 계약 현황

(단위: 원)

입찰	사 업 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입찰참가자격	입찰참여	
16. 2	경기장 경비, 청소, 보일러 관리용역	16.3.1-16.12.31	657,514,000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70개사	
16. 2	경기장 경비, 청소, 대여소, 기계관리 용역	16.3.1-16.12.31	579,668,100		75개사	
16.12	경기장 경비, 청소, 보일러 관리 용역	17.1.1-17.12.31	852,211,800		74개사	
	체육관 및 수영장 경비, 청소, 기계설비 관리용역		463,920,600		89개사	
	△△국민생활관 청소 및 기계실 용역		435,340,400		116개사	
	경기장 경비, 미화, 시설(기계) 용역		457,519,700		87개사	
	수영장 청소, 경비, 기계실 관리용역		530,711,500		81개사	
17.12	수영장 청소, 경비, 기계실 관리용역	18.1.1-18.12.31	546,533,900		86개사	
	△△국민생활관 청소 및 기계실 용역		436,917,830		113개사	
	경기장 경비, 청소, 기계 관리 용역		878,062,900		816개사	
	경기장 청소, 경비, 기계 관리 용역		496,523,500		88개사	
	체육관 및 청소, 경비, 기계 관리 용역		440,522,500		85개사	
18.11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관리	19.1.1-19.12.31	565,490,200		전국(서울업체)	645개사
	△△국민생활관 시설관리		480,042,640		전국(강원도업체)	900개사
	수영장 시설관리		582,264,100		전국(경기도업체)	640개사
	△△경기장 시설관리		531,488,400	전국(경기도업체)	670개사	
	경기장 시설관리		945,352,100	전국(서울인천업체)	557개사	
	인천광역시 및 훈련장 시설관리		402,867,300	전국(서울업체)	830개사	

3. 「시설운영 및 업무용 차량 임차」 제한 입찰

예규 제한입찰 운영요령(2015년도~2017년도)에 의하면 제한의 종류는 총 9가지가(1.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제한, 2. 기술보유상황 제한, 3. 시공능력 평가액 제한 4. 지역제한, 5. 설비 제한, 6. 유자격명부 제한, 7. 물품 납품능력, 8. 중소기업자, 9. 소기업·소상공인)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제한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제한입찰의 종류 범위내에서 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제한방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 ㉠㉠㉠ 임차용역(단가계약)” 등 4개(표 3 연번 1, 5, 6, 7)건은 제한입찰의 종류가 아닌 내용(전국 지정망+ 대여용 차량 3,000대~5,000대 이상 보유)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하였고,

“2016년 ㉠㉠㉠㉠㉠ 국민생활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등 2개 용역(표 3 연번 2, 3)은 민간의 실적을 폭 넓게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공공기관, 학교법인, 또는 스포츠센터”로 한정하였으며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였다

[표 3] 시설운영 및 업무용 임차 계약 현황

(단위: 원)

연번	입찰	사 업 명	규 모	기초금액	입찰참가자격	입찰참여
1	15.10	인천광역시 ㉠㉠㉠ 임차용역 (단가계약)	승합차3대 3년	327,600,000 (700,000)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 자 격: 전국 지정망(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을 갖추고 대여용 차량이 3000대 이상 보유한 자	3개사
2	15.12	2016년 ㉠㉠㉠㉠㉠ 국민생활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버스 4대 1년	118,800,000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실 적: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학교법인 또는 스포츠센터에서 전용전세버스운송사업을 1년 이상 이행한 실적	2개사
3	16.12	2017년 ㉠㉠㉠㉠㉠ 국민생활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버스 4대 1년	118,800,000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실 적: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학교법인 또는 스포츠센터에서 전용전세버스운송사업을 1년 이상 이행한 실적	2개사
4	17.12	2018년 ㉠㉠㉠㉠㉠ 국민생활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버스 4대 1년	118,800,000	인천광역시 실적제한 없음	2개사
5	16.10	㉠㉠경기장 업무용 차량 임차	승용차1대 3년	21,600,000	전국 지정망(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 을 갖추고 대여용 차량이 5,000대 이상 보유한 자	4개사
6	16.12	㉠㉠체육관 업무용 차량 임차	승용차1대 3년	21,600,000	전국 지정망(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 을 갖추고 대여용 차량이 5,000대 이상 보유한 자	3개사
7	17.12	㉠㉠㉠ 업무용 차량 임차	승합차1대 3년	33,480,000	전국 지정망(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 을 갖추고 대여용 차량이 5,000대 이상 보유한 자	2개사

앞에서 살펴 본 1. 「체육시설 이용 시스템」, 2.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 3. 「시설운영 및 업무용 차량 임차」 입찰 시 제한 입찰 조건을 과다 또는 잘못 적용하여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의 입찰 참여 기회와 입찰자 간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주의]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과, ○○○○부(○○○○팀)

내 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관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¹⁹⁾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리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경기부선수촌”시설인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인지부족으로 지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19) 안전점검 실시시기 : A~C등급(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

제3종 시설물 미지정 현황

위 치	건물명	규 모	연면적	주용도	사용승인일	미지정사유	비 고 (소유자)
○○○구 ○○동 000외 00필지	○○○경기장 ○○○	지하1/지상6	2,204.04	○○○	○○.○.○○	인지부족	인천광역시

※ ○○○○회(○○○○팀)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장은

(시정)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승인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시정) 제3종 시설물 지정 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 상태별 정기적 안전점검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점검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체육회

관 계 부 서 ○○○부(○○○팀), ○○○부(○○○경기장팀, ○○○경기장팀)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령 제26조의6, 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실적에 대해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부적정한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1]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적정 여부와 거래명세서 및 지급내역(공정별 현장 확인)등을 확인한 후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정산 준공을 소홀히 하여 [표 1]와 같이 5,28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과다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자	준공일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비고 (발주부서)
			㉠. 정산금액	㉡. 재확안금액	㉢. 과다지급액 (㉠-㉡) 【환수액】	㉠. 정산금액	㉡. 재확안금액	㉢. 과다지급액 (㉠-㉡) 【환수액】	
○○센터 ○○공사	(주)○○○	'○○.○○	3,745	2,255	1,490	-	-	-	○○팀
○○경기장 ○○공사	(주)○○○	'○○.○○	4,024	2,702	1,322	0	417	417	○○ 경기장팀
○○○ ○○공사	(주)○○○	'○○.○○	1,160	1,060	100	-	-	-	○○ 경기장팀
○○○경기장 ○○○ 및 ○○공사	○○○(주)	'○○.○○	6,026	4,068	1,958	-	-	-	○○ 경기장팀
계	5,287		14,955	10,085	4,870	0	417	417	

※ 인천광역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5,287천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과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및 내부 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 12개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447대에 대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내판 설치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하였으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및 내부 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제3자에게 제공·파기 또는 열람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누락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영상 정보 보호 계획 및 내부 관리계획 등을 수립 및 시행하시고,
- ② 향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사항 공지 및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제3자에게 제공·파기 또는 열람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설치기관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부)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사용내역 등은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최소 2년마다 이수하여 사용법 및 관리법 숙지,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임차하여 설치한 ○○경기장 등 체육시설 4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표시 및 유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시정)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입력하여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 ② 미 부착된 설치 안내표시 및 유도 안내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부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장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일러 화학세관 후 발생한 폐수의 위탁 처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는 ○○수영장, ○○체육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 대하여 법정검사인 ‘계속사용검사’를 합격하기 위하여 보일러 내 튜브에 쌓인 스케일을 제거하고자 매년 보일러 화학세관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보일러 화학세관의 주요 공정은 염산 등 강한 산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보일러 내 튜브에 쌓인 스케일을 제거하는 탈청작업과 탈청작업 후 강한 산성을 중화시키고 방청역할을 함으로써 부식을 억제하여 설비 노화를 방지하고자 중화방청제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중화작업으로 구분되며, 이 때 발생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규정되어 있어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후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폐수(위)수탁확인서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는 보일러 화학세관공사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개정²⁰⁾ 전에 시행함에 따라 수기로 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시공업체로부터 폐수(위)수탁확인서 및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폐수의 위탁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0) 2018년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함.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 (주의) ①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보일러 화학세관 후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www.mulbaro.or.kr)을 통하여 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